



2019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 · 퇴원 절차 안내



2019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CONTENTS

03 일러두기

04 용어의 약칭 등

05 I. 입원유형별 주요 안내 사항

06 1. 자의입원

07 2. 동의입원

07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0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11 5. 응급입원

13 II. 입·퇴원 유형별 안내

14 1. 자의입원

17 2. 동의입원

22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7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47 5. 응급입원

51 III. 입·퇴원 관련 제도

52 1. 추가진단 제도

65 2.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72 3. 입원연장심사 제도

101 IV. 부록

102 1. 법정서식·참고서식

161 2. 수가청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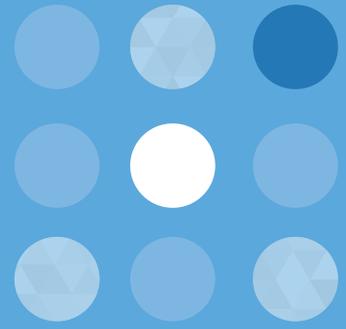
168 3. 입·퇴원 절차 관련 Q&A

일러두기

- 1 / 본 매뉴얼은 국가정신건강사업 안내의 내용, 매뉴얼 수준에서의 조작적 정의 등을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 2 / 매뉴얼 구성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입원유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가진단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 각각의 입원유형에 따른 정의 및 절차, 행정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필요 서식을 함께 기술하였다.
 - 입원절차 상 ‘대표 업무흐름도’는 입·퇴원 상황 중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또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였다.
 - 수시로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내용은 보완적으로 기술하여 상황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법 시행으로 적용되는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 및 절차를 행정사항 위주로 기술하였다.
- 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비자의입원 시의 추가진단제도와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상세히 기술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입원연장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 심사 지침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 4 / 그 밖에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되는 관련 서식, 수가청구지침과 입·퇴원 절차 관련 Q&A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용어의 약칭 등

연번	약칭 등	설명
1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보호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4	추가진단제도	제43조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한 제도
5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제45조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하는 제도
6	지정진단의료기관	법 제43조 제4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 따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등’
7	입원병원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8	기초지자체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9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	추가진단전문의	국·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되어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의
11	별지서식·참고서식	별지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서식이며, 참고서식은 법정 서식은 아니나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
12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비자의 입원에 따른 신고서류 및 행정절차등을 전산화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개발된 시스템 (www.amis.go.kr)
13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 (①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의 입원 기간 연장 심사, ②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③ 외래치료명령 심사 등)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 ※ ‘외래치료명령’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외래치료지원’으로 용어 변경 예정 (시행일 2020. 4. 24.)



I.

입원유형별 주요 안내 사항

1. 자의입원
2. 동의입원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
5. 응급입원

I. 입원 유형별 주요 안내 사항

1 자의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개념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제3조제1호)’으로 정의되었으며, 법적인 정신질환자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입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

- ▶ 개정 법률에서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한 주요 의의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음
- ▶ 따라서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 ▶ 또한 법문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등’이라 하며, 이런 사람들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 법문상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외연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등을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알코올 중독에 따른 장애가 심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의사를 밝혀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 퇴원의사는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제4호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I 법령 주요 내용

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1조)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2 동의입원

-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마찬가지로 자의로 입원의사를 밝혀 입원하며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 자의입원과의 차이점은 ①정신질환자만 입원이 가능하며 ②동의입원을 위해서는 본인의 입원의사와 함께 보호의무자 1명의 입원 동의가 필요하다. ③또한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고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퇴원이 제한된 72시간 동안 필요한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법령 주요 내용 |

동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2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환자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1명 동의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	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3. 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가.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부양의무자 중 후견인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기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 뿐 아니라,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

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그 밖에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는 보호입원이 가능하며 ①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이하 '입원필요성'), ②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하 '자·타해위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 입원기간

-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고,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 최초 입원 후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조사원의 환자 대면조사(신청자 및 직권조사 대상자에 한함)와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만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퇴원등으로 심사하여 정신의료기관에 통보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라. 입원연장

- 보호입원의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 이상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최초 연장 심사 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의 연장은 6개월까지이다.(최초입원 후 3개월 → 3개월 → 이후 6개월 주기)
- 입원기간 연장 심사의 요건은 최초입원과 동일하게 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필요하다.

| 법령 주요 내용 |

보호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보호의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2. 후견인 우선 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원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위 1·2·3의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입원 후 2주 이내에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 가능 2. 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 최초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4. 최초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5.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사 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입원 연장 심사 청구시마다 2인의 전문의 진단 필요(그 중 1인은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함)
입원연장 동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퇴원절차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입원 필요성 + 자·타해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 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

4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가. 입원 절차

-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한 경우 지자체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다.
- 또한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자·타해위험이 있어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다.
- 2주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보호입원과 달리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일 필요는 없다.
-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 치료를 위한 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나. 입원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다. 입원 기간

- 최초입원 후 3개월, 최초 연장심사 후 3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보호입원과 동일하게 입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연장을 위해서는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연장 결정이 필요하다.
※ 보호입원과 달리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일 필요는 없다.

| 법령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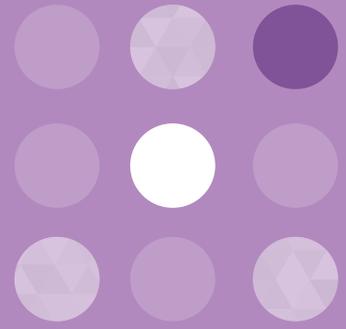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 제62조)
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의 신청 2.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3. 전문의 진단 4.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2주, 지정정신의료기관) 5. 2인 이상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6.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지정정신의료기관) 7. 행정입원(3개월)
입원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 2. 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 심사 (최초 입원 시에는 3개월, 최초 입원연장 이후 3개월, 그 후 매 6개월마다)

5 응급입원

- 응급입원 기간은 3일(공휴일 제외)이다.

| 법령 주요 내용 |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입원신청 절차와 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2.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 환자에 대해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4.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 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 5.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



II.

입·퇴원 유형별 안내

1. 자의입원
2. 동의입원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5. 응급입원

II. 입·퇴원 유형별 안내

1 자의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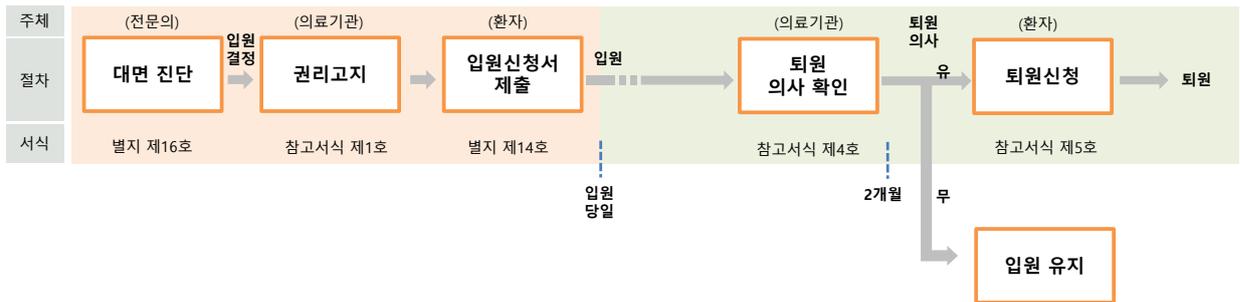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자의입원등, 시행규칙 제32조 자의입원 등.

나. 자의입원의 권장

-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중략)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 (법 제2조제5항)하여 자의입원을 권장하고 있다.

다. 입원 절차



1) 대면진단

-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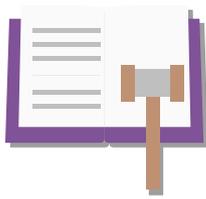
-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 (법 제68조 제1항)
- ※ 위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2) 권리고지

- 자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보호자(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여도 무방)가 있을 때에는 권리고지 제공. 다만, 정신질환자가 따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고지
- ※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대상자에게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고지 후 고지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사항

-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입원신청서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대상자(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는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 신청서 서식 중 보호자란의 보호자는 반드시 환자의 법적 보호의무자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란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아도 무방함
- ▶ 신청서와 함께 대상자의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가능) 사본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제출받아야 함

4) 퇴원의사 확인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4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 참고서식 4는 입원유형과 퇴원의사 유무 여부를 체크하고 퇴원하거나 계속 입원하려는 등의 이유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5) 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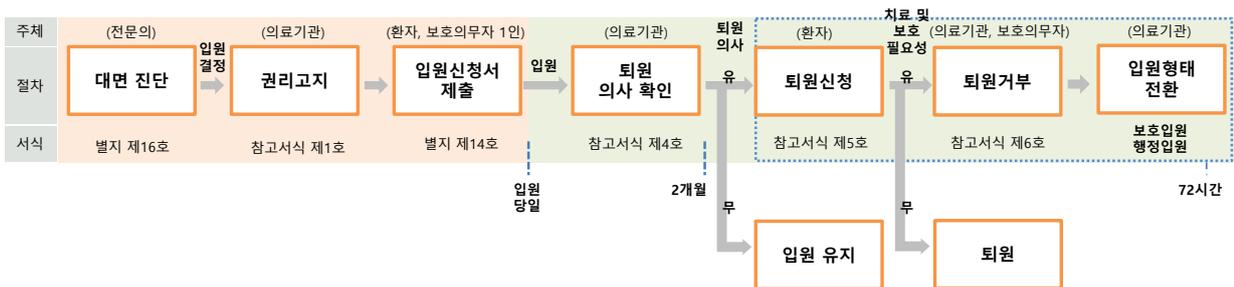
-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없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 자의입원 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서류로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5를 활용할 수 있다.
 - ※ 참고서식 5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을 시키기 전까지 구두로 여러 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성.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원하여 퇴원 후 병원 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

2 동의입원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동의입원등, 시행규칙 제33조 동의입원 등.

나. 입원 절차



1) 대면진단

-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법 제68조 제1항)

※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등)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달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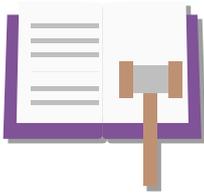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2) 권리고지

- 동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에게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각각 고지 후 고지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사항

-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입원신청서 제출

- 정신질환자가 동의입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보호의무자 1명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 입원신청 시 보호의무자의 동기가 없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동의입원을 시킬 수 없다.
- 정신질환자가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기관장 등은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 보호의무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법 제43조의 보호입원을 신청하는 보호의무자와 동일)이며, 보호의무자 1명으로 입원이 가능함

-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이 서류도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동의입원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3조)

①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②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 주민등록표등본(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

4) 퇴원의사 확인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4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서식 4는 입원유형과 퇴원의사 유무 여부를 체크하고 퇴원하거나 계속 입원하려는 등의 이유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5) 퇴원

① 퇴원신청

-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 동의입원 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서류로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5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5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을 시키기 전까지 구두로 여러 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성.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호의무자란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

-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원하여 퇴원 후 병원 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하지 않음. 다만,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퇴원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연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여 동의를 얻을 필요성이 있음

② 퇴원거부

-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 72시간의 기산점 : 환자가 퇴원 의사를 구두로 밝히거나 서류로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둘 다 있을 때에는 서류를 제출한 시점이 퇴원제한 시간인 72시간의 시작으로 인정

❖ 동의입원의 퇴원 제한 요건

- ▶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 ▶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을 것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그 거부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6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6은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6(또는 이를 참고 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 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③ 다른 입원으로 전환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한 72시간 동안 보호입원(보호의무자 신청이 가능할 때), 행정입원으로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도록 할 수 있다. 72시간 내에 다른 입원 절차를 거치지 못했을 경우 퇴원하여야 한다.

- (보호입원으로 전환) 정신의료기관장은 전문의 진단을 통해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고 보호의무자 2명이 서명한 ‘보호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와 각종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수령 →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자세한 사항은 이 매뉴얼의 보호입원 장을 참고한다.

※ 동의입원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보호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입원은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원 수속을 밟은 날부터 시작된다.

- ▶ 보호의무자 1명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동의입원 시 입원에 동의 한 보호의무자의 증빙서류로 같음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의무자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보호의무자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거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한다.)
- ▶ 보호입원에 따른 추가 보호의무자 1명의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행정입원으로 전환)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와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 결과서(별지 제 16호서식)’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자체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진단을 위한 2주간 행정입원 의뢰 →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자세한 사항은 이 매뉴얼의 행정입원 장을 참고한다.

※ 동의입원의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행정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입원은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참고서식 제14호서식)를 받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수속을 하는 날부터 시작된다.

※ 일반적으로 “진단 및 보호신청서 제출→진단 의뢰→진단 결과서 제출→행정입원의뢰(2주)” 과정을 거치나, 병원에 응급·동의·보호입원한 상태에서 행정입원을 하려 할 때에는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진단결과서 제출→행정입원 의뢰(2주)”로 처리

◎ 행정사항

- ▶ 동의입원에서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환자는 새롭게 비자의입원을 한 것이므로 별도의 권리고지 과정을 진행해야 함

다. 구비서류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시행령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 기간, 시행규칙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나. 입원절차



1) 대면진단

-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 (법 제68조 제1항)
 - ※ 위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 보호입원은 자의입원과 달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 “①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②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2항)”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지 각각을 진단해야 한다.
 - ※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등 권고서에 해당
-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보호의무자가 보호입원을 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여 작성하고,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 ※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진단 결과서는 국립정신병원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

- 이 때,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은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 시행규칙의 기준은 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한 질병이나 증상, 자·타해위험성 기준 등 일정한 기준을 나열할 경우 자·타해위험이 나열한데로 한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 나열하지 않고 기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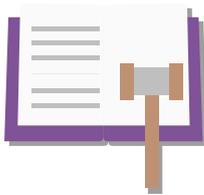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고지내용

▶ 법 제43조 제2항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②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④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⑤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기준은 ①본인 또는 타인에게 외향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②본인 또는 타인에게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③ 본인에게 내향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로 구성되며, ①,③은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와 개연성이 높은 경우로 분리하여 서술한 것으로,

※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 또는 자해 위험, 증상의 악화나 중독성 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및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방화, 기물파손, 공격적 언행 등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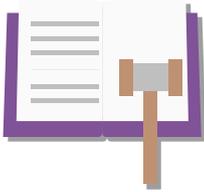


2) 권리고지

- 보호입원이 결정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 1 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2인에게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각각 고지 후 고지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사항

-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입원신청서 제출

- 보호입원을 하려는 경우 최초에는 전문의 1인의 입원을 권고한 권고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진단 결과서')와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이 가능하다.
- 보호의무자 2명이 '보호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의무자 2명이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신청으로 입원할 수 있다. (참고서식 21호 활용)

○ 행정사항

- ▶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임.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 ▶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이 우선함. 후견인이 없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안내의 판례를 참고하되,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한 바에 따르고 협정이 없는 경우 민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오도록 해 선순위 부양의무자의 의견에 따름. 이 때 법원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환자의 자·타해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행정 입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법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 고시)**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이하 내용 참고)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경우
-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상기의 사람이 출소, 의사결정 능력 회복, 부양의무 이행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부양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참고서식 제19호, 제20호 활용**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참고서식 제19호 활용)
-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를 제출하고(참고서식 제20호 활용) 이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경우
- 이 때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 예시)
 - 이혼한 한 부모 가구로 부(또는 모)가 재혼 등 이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부양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의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이 서류도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보호입원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

1)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2)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 ①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

3) 입원등 권고서 관련

-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단 결과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

- 정신의료기관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기간 내에 입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

▶ 참고 : 법 제43조 제1항 '입원등을 할 때'의 행정해석

-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판단을 전후하여 실제 입원시까지 관련 부속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응급상황·야간·공휴일 등에 입원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서류를 입원 시까지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입원 후에도 보완할 수 있다. 보완 가능한 시기는 전후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최초입원 후 2주 이내

① 입원 사유 통지 (입원 직후)

- 보호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7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7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 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장은 본 참고서식 7(또는 이를 참고 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시킨 즉시 입원을 한 사람에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여부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1을 활용할 수 있다.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퇴원등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입원사실 신고 (최초입원 후 3일 이내)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이 결정되면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67조 제2항과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조항들에 따라, 최초입원 후 3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상에서 등록 후 최종적으로 신고 버튼을 눌러야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입력 사항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신고 됨

※ 최초입원 후 3일 이내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4조 제4항)

③ 두 번째 전문의 진단 (최초입원 후 2주 이내)

- 최초 입원 시 2주 이상 입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아야 한다.

※ 보호입원을 한 사람은 입원병원의 전문의 1인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기 때문에 2주 이내에 다른 전문의 1인에 의한 추가 진단이 필요하게 됨

- 2인 이상의 전문의 중 1인 이상은 국·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한다.

※ 환자의 입원병원이 지정진단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반드시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로부터 두 번째 진단을 받아야 함

- 두 번째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여 작성한다.

※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의거

※ 추가진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진단의 장을 참조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입원병원 전문의 소견과 두 번째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보호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일치 여부를 의료기관에 통지한다.

※ 결과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 통지 내용

- 최초입원 시 정한 2주 내 기간 이상으로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
- 최초입원 시 정한 2주 내 시간이 지나면 퇴원시켜야 함

▶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법 제43조 제11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시행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 최초입원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달리 정하는 시행방안

※ 동 예외규정 시행방안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입원(입소) 이후 2주 이내(14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 진단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실시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을 할 수 없으며, 고의·과실로 미신청하거나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 점검 실시
- 입원 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이 최초 입원(입소)일부터 12일까지 추가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12~14일)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 실시(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환 신청)
- 기간의 말일(14일)이 주말·공휴일로 전환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그 다음 평일에 기간이 마감되므로 전환 신청이 가능

5) 입원유지 또는 퇴원

① 입원유지

- 입원병원 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에게 법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입원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최초입원일로부터 1개월의 범위 내로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 또한 법 제47조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입원등 유지일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내 입원연장 심사를 청구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② 퇴원신청

-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한다.
- 입원한 사람은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람이 서류로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5를 활용할 수 있다.
 - ※ 참고서식 5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을 시키기 전까지 구두로 여러 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성.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호의무자란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
-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때, 그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의무자일 경우에는 모두 퇴원 신청이 가능하다.
-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 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원하여 퇴원 후 병원 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퇴원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연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여 동의를 얻을 필요성이 있음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퇴원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11을 활용할 수 있다.

※ 이 때 보호의무자는 법정상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한 사람의 모든 보호의무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입원 시 다른 보호의무자를 환자가 정하여 미리 알려놓은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될 것임

※ 입원을 신청하지 않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여 퇴원시키는 경우나 환자 본인이 신청하여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1, 2를 모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중 한 명이 퇴원을 신청하여 퇴원시키는 경우 다른 한 명의 보호의무자만 기재하여 알림

-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두 번째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아 퇴원시키는 경우에도 퇴원 사실을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11(또는 이를 참고 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③ 퇴원거부

-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 보호입원의 퇴원 제한 요건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 참고 : 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장이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하나, 보호입원은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음

-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6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6은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6(또는 이를 참고 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퇴원등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퇴원거부 이후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퇴원등 처우개선 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정신의료기관장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퇴원을 요청하거나,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를 요청한 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가 있기 전에 발생한 추가적 퇴원요구)에는 그 때마다 서면으로 거부사실 및 사유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

※ 이 때 단기간의 판단은 입원 연장심사가 있었던 3개월의 기간, 보호입원을 한 사람의 호전 등 사정의 변경을 기준으로 경우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6) 입원기간 연장

① 입원기간 연장심사 주기

- 법 제43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보호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3개월에는 전문의 2인의 진단을 위한 2주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기간 1개월이 모두 포함됨

- 법 제43조 제5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법 제43조 제5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매 입원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이를 정리하면 최초 입원일 기준으로 ‘3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 주기로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입원기간 연장심사 청구 기간·요건 및 구비 서류 등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지자체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 입원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다음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보호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 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 이 때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②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이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면 기존 신청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연장 가능
 - 최초에 보호의무자가 1명 밖에 없어 1명이 신청하였으나, 이후 후견인 지정이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등으로 보호 의무자가 새로 생긴 경우 1명을 추가하여 연장 가능(추가된 보호의무자의 증빙서류 구비 필요)
-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정신의료기관장이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참고서식 9를 활용할 수 있다.
- 연장심사를 청구할 때에도 입원병원을 포함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여 작성* 한다.
 - *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의거
 - * 입원 요건 등에 대해서는 이 장의 입원 요건 관련 내용을 참고
- 법 제43조 제11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시행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입원 기간 연장심사 신청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달리 정하는 시행방안

※ 동 예외규정 시행방안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입원(입소) 등을 한 환자(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입원(입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심사 청구 전에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전문의에 의한 추가진단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실시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을 할 수 없으며, 고의·과실로 미신청하거나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 점검 실시
- 입원(입소)만료일 2개월 전부터 입원(입소)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 청구 가능
 -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2주 전까지 추가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감일까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으로 전환 신청
 -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은 국·공립, 지정진단의료기관에 한해 가능
- 전문의 1인 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축탁의 1인)의 경우,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추가 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아야 함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진단 여부를 정신의료기관에 통지 한다.

※ 결과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 통지 내용

-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
-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불필요

▶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정신의료기관장은 참고서식 9 등을 활용해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면서,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와 보호의무자 2명의 입원기간 연장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첨부한다. 이 때 입원기간 연장에 동의한다는 서류는 참고서식 12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9·12대로 하지 않고 달리 할 수 있음

- 별도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의무자의 개명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원기간 연장 청구 구비서류

- ▶ 참고서식 9 등을 활용한 입원연장심사 청구서
- ▶ 참고서식 8 등을 활용한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
- ▶ 참고서식 12 등을 활용한 보호의무자 2명의 입원기간 연장에 동의한다는 서류
- ▶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보호의무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입원기간 연장 심사

-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고,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 ※ 입원기간 연장 심사는 지자체의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내용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므로 각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입원기간 연장을 심사한다.(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시 할 수 있는 명령 또는 결정

- 퇴원 또는 임시퇴원 명령
-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 3개월 이내 재심사
-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보호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체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7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7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 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7(또는 이를 참고 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심사 기간 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이 통지 받은 날 부터 보호입원은 퇴원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등을 한 것으로 본다.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함

-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심사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하고,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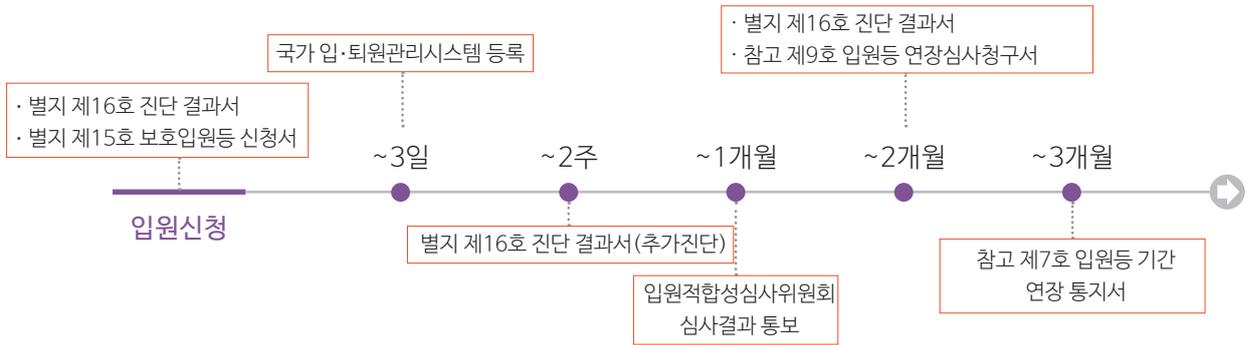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함(3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3개월, 6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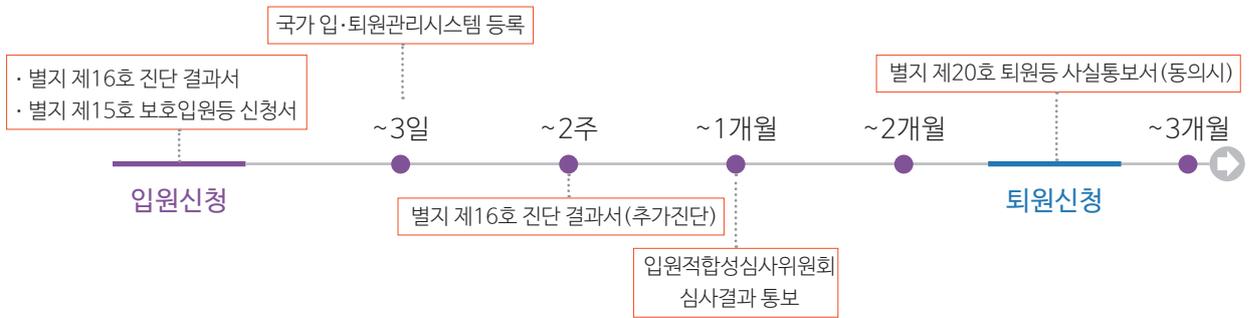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함

7) 구비서류

- 입원기간 연장의 경우



- 입원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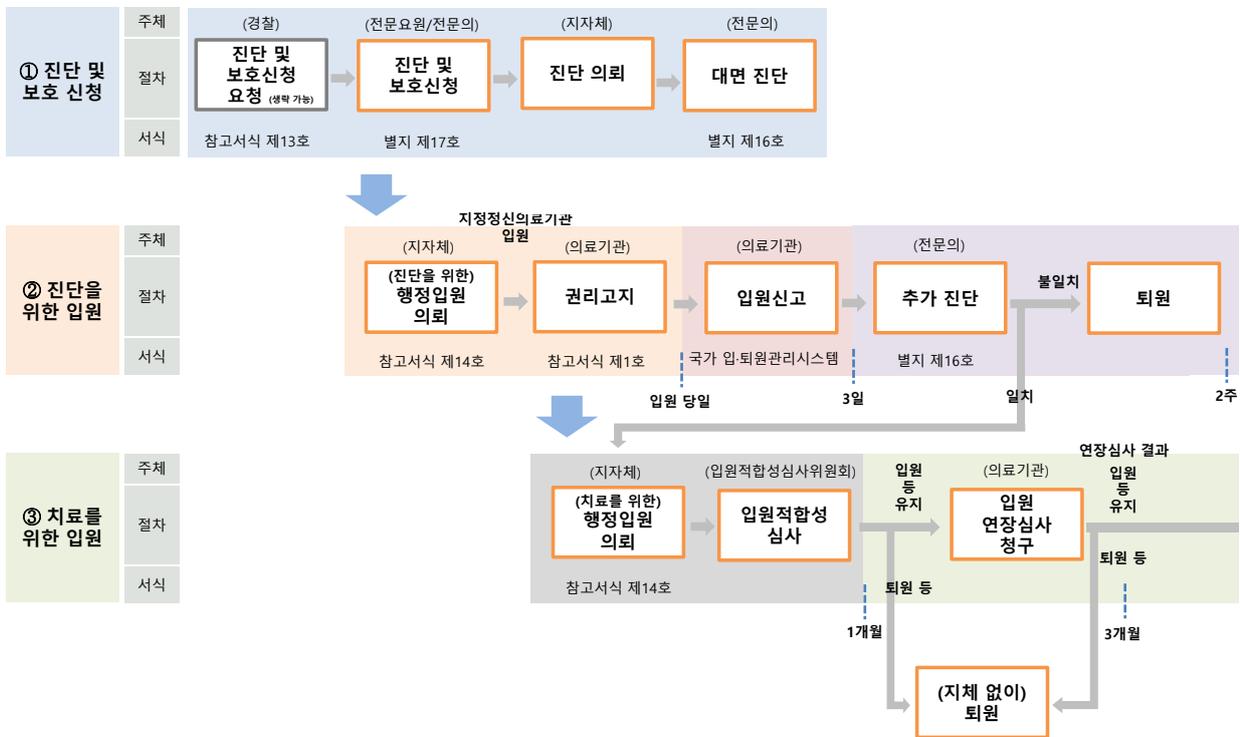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시행령 제19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시행규칙 제36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7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나. 행정입원 절차



1) 진단 및 보호 신청

▶ 정신의료기관 외부에서 발견된 대상자의 경우

- 대상자 발견 → (경찰관이 전문의를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 요청) → 전문의를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 지자체장이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 의뢰받은 전문의가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 →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또는 귀가조치

※ 괄호 안은 필수절차가 아닌 사항

▶ 동의·응급입원 등 입원해 있는 대상자의 경우

- 행정입원 필요성 있는 대상자 →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전문의 진단 결과 통지 →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또는 퇴원조치

① 일반적인 경우(외부에서 대상자 발견)

-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참고서식 13을 활용할 수 있다.

※ 경찰관에 의해 진단 및 보호 요청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생략될 수 있는 과정임

※ 경찰관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며, 경찰이 직접 행정입원을 ‘신청’할 수는 없음

※ 46p 참고자료는 경찰에서 행정/응급입원 출동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 진단 및 보호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한다.

- 진단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대면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로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고, 지자체장의 진단 의뢰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동의·보호입원이 가능한 경우 이를 먼저 고려할 것을 권고함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법 제68조 제1항)

※ 위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법 제68조 제2항)

※ 진단 의뢰 과정에서의 전문의 진단 결과서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음

- 지자체장은 진단 의뢰 결과 전문의로부터 자·타해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으면, 2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응급입원 혹은 동의입원 한 환자를 행정입원 시키려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입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를 받지 못한 경우 병원에서는 퇴원시켜야 함.

-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 시키

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119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이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법 제44조 제3항)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 내에서 입원시키는 경우(법 제44조 제4항)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4조제9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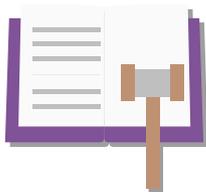
② 입원해 있는 대상자의 경우

- 동의입원 후 퇴원 신청한 환자에 대해 퇴원거부하고 72시간 이내에 행정 입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나 응급입원 이후 3일 이내에 행정입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와 전문의가 대면진단 결과 작성한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한번에 제출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은 서류를 확인하고 진단 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 2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

2) 권리고지

- 지자체장이 행정입원을 의뢰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 행정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보호자(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여도 무방)나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권리고지 제공. 다만, 정신질환자가 따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고지 후 서명을 받아, 1부를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사항

-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2주 이내)

① 입원 사유 통지 (입원 직후)

- 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체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사유, 기간,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참고서식 7을 활용할 수 있다.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시킨 즉시 입원을 한 사람에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을 한 사람의 대면 조사 신청 여부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때 참고서식 1을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퇴원등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입원사실 신고 (3일 이내)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이 결정되면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사실을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67조 제2항,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조항들에 따라, 최초입원 후 3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입력 사항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신고 됨

③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 (최초입원 후 2주 이내)

- 지자체장은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은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시켰을 때 입원을 한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신의료기관일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통지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없이 2인 이상의 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진단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때 전문의의 진단은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로 작성

하여 통지한다.

※ 보호입원과 달리 행정입원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할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의 진단도 가능

-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여 작성한다.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진단을 확인하여 정신 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의 일치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통지 한다.

※ 결과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지정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 통지 내용

-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
- 2주 내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퇴원시켜야 함

▶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에게 통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치료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2주의 범위 내의 기간을 넘어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2주 내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퇴원시켜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 2인 이상의 전문의 중 1인은 최초 진단을 위한 2주 입원을 권고하는 진단 결과서를 작성했던 전문의여도 무방함. 다만, 새로이 진단 결과서를 보내야 함

4)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① 입원유지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치료를 위한 입원 의뢰를 받은 후, 법 제47조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입원등일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환자를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은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참고서식 7을 참고하면 된다.
- ※ 이때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신의료기관일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통지
- 퇴원요청시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6을 활용할 수 있다.
- ※ 참고서식 6은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서식

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6호 및 7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와 입원 연장을 결정한 지자체가 동일한 경우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 이 때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지자체

※ 행정입원은 보호입원과 달리 입원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제한이 없음
(지정정신의료기관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자체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함)

② 퇴원

- 행정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이들에게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를 정신질환자가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자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입원 해제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 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함

- 지자체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입원을 한 날로부터 입원이 만료되는 3개월(또는 6개월) 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입원연장 청구 또는 입원연장 사실 통보가 없으면 입원 후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 행정입원은 만료됨

- 지자체장은 참고서식 15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행정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 참고서식 15를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퇴원 시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 장에게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원하여 퇴원 후 병원 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하지 않음.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퇴원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연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여 동의를 얻을 필요성이 있음

다. 입원기간 연장

1) 입원기간 연장 주기

- 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한 날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법 제62조 제2항 본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법 제62조 제2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 마다 할 수 있다.
- 이를 정리하면 행정입원 최초 입원일 기준으로 ‘3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 주기로 입원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2) 입원기간 연장 요건 등

- 지자체장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행정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 된 경우

- 이 때 기간 연장을 위해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 시스템에서 입력하여 작성한다.

※ 보호입원의 경우와 달리 행정입원 기간 연장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할 때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이거나 1인 이상은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없어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의 진단도 가능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진단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한다.

※ 결과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 통지 내용

-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
-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불필요

▶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입원 기간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한다.

3) 입원기간 연장 심사

-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이므로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가지고 직접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한다.

※ 이때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지자체를 의미한다.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와 입원 연장을 결정한 지자체가 동일한 경우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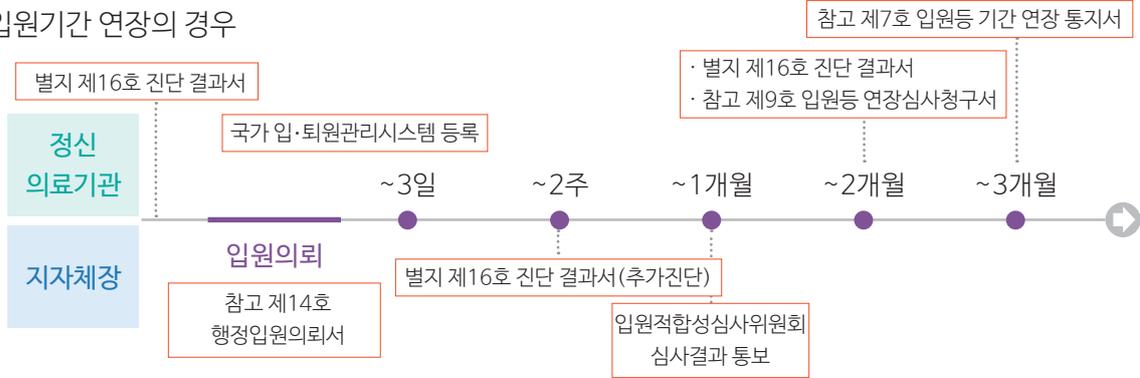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므로 각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입원기간 연장을 심사(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행정입원은 보호입원과 달리 입원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제한이 없음(지정정신의료기관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자체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함)

-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라. 구비서류

- 입원기간 연장의 경우



- 입원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 2018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의 위험성 및 긴급성 판단기준 (※ 구 version도 가능)

요건	판단 기준	현장상황 메모
정신질환 추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및 판단내용 (질문 불가시) ① (진료전적) 정신건강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Y/N) ② (망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최근에 무언가가 당신 생각을 방해하거나 조종한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Y/N) ③ (환각) 최근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Y/N) ④ (피해망상)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는 생각이 들고 실체라고 확신합니까? (Y/N) ⑤ (현실감증력) 누구도 이런 상황을 도와주지도 막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Y/N) 	<p>보이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초조 <input type="checkbox"/> 혼잣말 <input type="checkbox"/> 말없음 <input type="checkbox"/> 횡설수설 <input type="checkbox"/> 공격언행 <input type="checkbox"/> 기타특징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건물, 난간·다리 및 저수지 등 위험한 장소에서 뛰어내릴 듯한 언동과 자세를 취하는 경우(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장소에서 죽는다고 혼잣말을 하는 수준의 추상적 표현으로는 부족) • 수면제 등 위험한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거나, 손목이나 목 등 위험 부위의 자해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 경우 • 차도, 기차길 등에 뛰어들거나, 화기류·번개탄·약물 등 위험물건을 가까이 하는 등 위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망상,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며, 재산이나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등 자살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저체온증·아사 등 생명·신체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칼, 깨진 유리병 등)을 들고 있거나,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 타인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일반적 위협은 2회 이상) ※ 치명적 위협 : 흉기로 두부, 복부 등을 찌르려고 하는 등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 ※ 일반적 위협 : 폭행 등으로 인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체에 위험 발생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욕설 등 공격적인 성향이 지속된 경우 • 타인에 대한 위협적인 집착이 심각한 경우 • 위 열거한 경우 외에도 뚜렷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를 피해자와 일정 기간 이상 격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위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 고위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거나(보호자의 인수 거부 포함), 있더라도 단시간 내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 야간·공휴일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1) 참고 : 경찰에서 응급(행정)입원 관련 출동 시 판단에 활용하는 매뉴얼로 경찰은 이를 의료기관에 참고가 되도록 제출함
 → 출동경찰이 현장상황 메모 작성, 의료기관에 원본 제출 후 사본(스캔)은 스마트 워크시스템 저장

5 응급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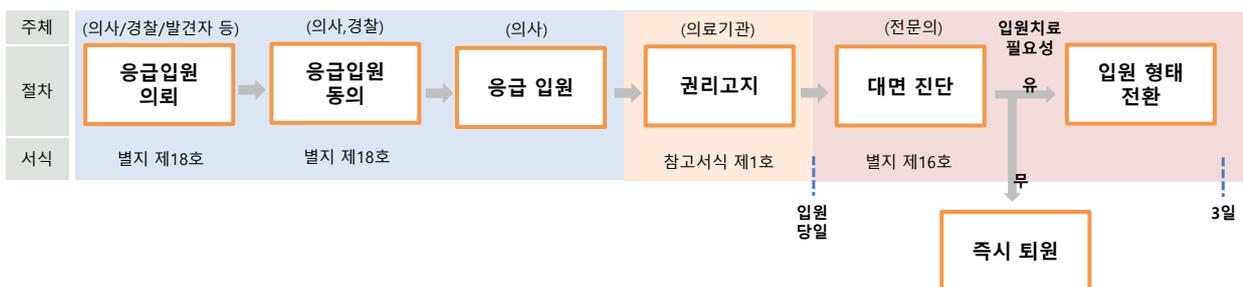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 시행규칙 제39조 응급입원

나. 응급입원의 취지

-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진행되는 입원이다.

다. 입원 절차



1) 입원의뢰 및 입원동의

-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 다른 유형의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46p 참고자료는 경찰에서 행정/응급입원 출동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응급입원을 위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동안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호송하여야 하고, 119 구급대가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음

-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 의뢰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뢰의 주체가 의사나 경찰인 경우 동일인이 작성가능

-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명)는 대상자를 발견한 시점에 발견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으로 호송한 이후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 참고 : 경찰에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한지 등을 지정정신의료기관 등 정신의료기관에 미리 유선 상으로 문의하고 호송함

❖ 응급의뢰서 작성 (별지 제18호)

▶ 신청인

- 신청하는 작성 주체의 정보를 기입
- 경찰, 전문의, 전문요원의 경우 주소는 기관명으로 같음 가능함

▶ 피신청인

- 환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기입
- 발견한 장소는 면담을 진행한 장소를 기입해도 무방함
- 주소, 전화번호 등은 파악할 수 있는 사항만 적어도 무방함

▶ 보호자

- 환자가 면담 가능할 경우 기입
- 파악할 수 있는 사항만 적어도 무방함

▶ 확인사항 체크 (경찰관, 최초 발견자 등 별도 작성 가능)

- 정신질환의 의심 : 정신증, 기분장애, 급성 혼란 상태 등을 말함
- 자해위험 : 자살사고, 자살 위협, 과거 자살기도 등 자살 관련 행동을 포함
- 타해위험 :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어적 위협도 포함
- 다른 입원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 : 보호의무자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호의무자 신원파악이 어려운 경우, 행정입원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사유 등을 기술
- 응급입원 의뢰 경위 : 응급의뢰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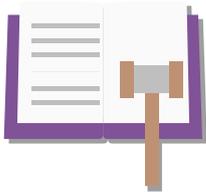
2) 권리고지

- 응급입원 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등을 할 때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질환자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고지해야 하며 고지대상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이 때 참고서식 1을 활용할 수 있음

※ 응급입원의 경우 응급상황으로 인해 입원 전에 권리고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입원 후에 권리고지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 다만 환자가 권리고지에 서명하지 못할 경우 서명불능사유 기재 후, 서명불능사유가 해소된 즉시 다시 고지해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신상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고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사항

-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응급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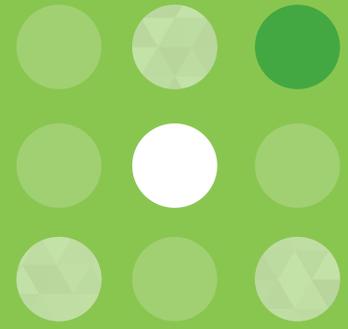
- 응급입원이 결정된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전문의에게 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이 때 전문의는 '진단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신의료기관장은 이 진단 결과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 전문의의 진단결과서는 별지 제16호를 사용하지 않고 달리 할 수 있음
- 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일의 기간 이내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중 하나의 입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전문의 진단 결과 자·타해 위험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장은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16을 활용할 수 있다.
 - ※ 참고서식 16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가 파악되는 경우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4) 입원 형태 전환

- 자의입원으로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환자의 자의입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자의입원 신청서를 환자가 직접 작성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 응급입원은 소멸되고, 자의입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한다.
- 동의입원으로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환자의 동의입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 보호입원으로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호의무자 2명의 서명이 기입된 보호입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출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 행정입원으로서의 전환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인 경우와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로 나뉜다.
 - ※ 지정정신의료기관일 경우 :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진단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하고 지자체로부터 '행정입원의뢰서'를 받으면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
 - ※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진단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하고 지자체로부터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함
 - ※ 이때 지자체로부터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고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수속을 하는 날을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함
 - ※ 진단결과서는 응급입원시 작성한 진단결과서와 양식이 같을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으로 같음 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신상정보 미확인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자체장등에게 신상정보조회요청 시 회보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경찰서에 조회 요청 가능



Ⅲ.

입·퇴원 관련 제도

1. 추가진단 제도
2.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3. 입원연장심사 제도

III. 입·퇴원 관련 제도

1 추가진단 제도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시행령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시행규칙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2주 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 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함

나. 주요내용

1) 적용 범위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보호입원)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하면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입원유형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 행정입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에 의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자체장이 의뢰하여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입원 유형

※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 가능

2) 입원 요건

① (보호입원) 입원 치료 필요성, 자·타해 위험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만 입원이 가능함

▶ 입원치료 필요성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인정 (제43조 제2항 제1호)

▶ 자·타해 위험성

- 환자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기준 충족 시 인정(제43조 제2항 제2호)

②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만 존재하는 경우도 인정됨

3) 진단인력 및 입원 의료기관

① (보호입원)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 필요

-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주의 기간 내에서 입원 가능
- 입원 후 2주 이내 타기관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가능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입원 가능
- 전문의 2인 중 1인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② (행정입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전문의 2인(보호입원과 달리 소속은 무관)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 필요

- 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신청 → 지자체 진단 의뢰 →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최대 2주까지 입원 가능
- 입원 후 2주 이내 지정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가능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입원 가능

4) 입원기간 연장

-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모두 3개월 내 입원 후 입원기간 연장심사를 통해 1차 연장(3개월 내), 추가 연장(6개월 내) 가능
- 입원기간 연장 심사 시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 필요(보호입원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 행정입원은 기관 소속 무관)

다. 시행방안

1) 지정진단의료기관 선정

-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정의)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의료기관
 - 보호입원 시 입원 대상 의료기관 외에 추가 전문의가 소속되어 진단하는 정신의료기관
- (선정 기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① 정신건강전문요사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

- 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인이고 입원병상이 운영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희망시 예외적 지정* 가능

* 예) 외래치료를 하는 개원의가 주 1~2일 입원진단을 원하는 경우

② 지정 전 2년간 의료법·정신보건법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의료기관

- ▶ (선정 절차 및 일정) 지자체별 공모→ 지자체별 선정→ 지자체별 선정기관 보건복지부 승인
- ▶ (운영) 전문의 현황, 기관 간 거리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한 시도별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 전산시스템(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이용

2) 추가진단전문역의 역할

- ▶ 입원병원 외 전문의의 소견을 필요로 하는 병원의 환자에 대해 입원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에 대한 소견을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에게 제출
- ▶ 국립정신병원장이 입원 혹은 퇴원 통지

3) 추가진단전문역의 예외규정 시행방안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1항 : 법 제43조 제4항(최초입원 시 추가진단), 제43조 제6항 제1호(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시 2인 이상의 진단)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인 이상 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35조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정신병원등(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국립정신병원 등)의 관할지역 별로 정신의료기관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전문의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

- 예외규정 시행방안에 따른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진단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전문의 1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축탁의 1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아야 함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우선 이를 먼저 신청한 뒤,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진단을 실시
-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후속조치를 통해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하의 경우에 대해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 점검 실시

- ① 고의·과실로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미신청*
- ②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게 한 경우**
- ③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으로 인권침해 등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예) 배정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고 자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예)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신청을 받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 배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하는 경우

1) 비자의입원등을 신규로 한 환자(시설 입소자)

비자의입원등을 신규로 한 경우, 2주 이내(14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진단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

-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이 최초 입원(입소)일로부터 12일까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함
- 최초 입원(입소)일로부터 12일까지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12일 정도 ~ 14일)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로 추가진단 전환 신청 가능(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전환 신청)
- 기간의 말일(14일)이 주말·공휴일로 전환신청이 곤란한 경우, 그 다음 평일에 기간이 마감되므로 그 다음 평일까지 전환신청이 가능

2) 비자의입원등을 한 환자(시설 입소자)의 기간 연장

비자의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 경우, 연장심사 청구 전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진단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

- 입원(입소)만료일 2개월 전부터 입원(입소)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 심사 청구 가능
-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이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14일 전까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함
-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14일까지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 청구 마감일까지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로 추가진단 전환 신청 가능(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전환 신청)

라. 추가진단 절차

【지정진단의료기관】

① 행정인력(원무과등)

- ▶ (역할) 대상자 확인, 전문의 지원, 진단결과서 등록 및 원본관리
- ▶ (대상자 확인) 전문의의 추가진단이 필요한 병원 및 대상자 확인하고 그 정보를 추가진단 전문의에게 고지
- ▶ (전문의 지원) 추가진단 가능한 전문의 및 가능일자를 확인하여 일정 관리, 전문의 정보를 진단요청 병원 담당자에게 고지
 - 병원 간 매칭의 취소·재지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지사체장에게 보고하고 지사체장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게 알림
- ▶ (진단 결과서 관리) 전문의의 진단 결과서 등록 여부 점검 및 원본 보관

❖ 지정진단의료기관 협조사항

행정인력(대체근무자) 지정은 의료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담당자의 연락처 및 근무부서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운영자에게 고지

② 추가진단전문의

- ▶ (과정) 1차 전문의 소견 확인, 필요사항 요청 → 병원 방문 및 환자 대면진단 → 진단결과서 작성
- ▶ (준비) 1차 전문의 소견 확인*, 보호의무자 및 의료진 면담 등이 필요할 경우 방문 병원에 사전요청, 준비물품** 구비
 -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
 - ** 준비물품: 신분증, 진단 결과서 양식(기록지), 방문 병원 위치 및 대상자 명단
- ▶ (방문) 신분증 제시 및 관리대장 기록·서명 후, 안내에 따라 마련된 장소에서 지침에 따라 환자대면 진단

❖ 주요 평가 기준

- ▶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 ▶ (진단 결과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후 익일까지 시스템에 입력, 세부평가 내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평가
 - 입력한 진단 결과서는 출력 후 추가진단전문의가 서명하여 추가진단전문 의 소속 의료기관에 보관

③ 기타 고려사항

1. 환자와의 면담과정

- 추가진단전문의를 입원병원 치료진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파악
- 추가진단전문의를 면담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입원병원에 명확히 요구
- 환자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며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추가진단전문 의라고 환자에게 소개
- 면담 중 추가진단전문의를 진단 결과 및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의 진단과정에 대해 문의할 경우 입원병원 치료진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안내
- 추가진단전문의를 환자와의 원활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사유(환자의 거부, 진정, 금단 등의 증상)인 경우 해당 상황을 대면한 후 환자 상태 관찰, 차트 등 진료기록 검토, 치료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판단
- 추가진단전문의를 대면진단 익일 이내에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추가진단전문의로서의 소견을 입력하고, 1부는 출력하여 서명 후 소속병원 해당 부서에서 보관
- 추가진단전문의로서 완결한 진단 결과서는 수정 불가
- 추가진단전문의를 면담에 필요한 환자의 입원과 관련된 서류 (환자 및 보호자 입증 서류, 동의서 등)의 확인이 필수 검토사항은 아니나, 추가진단전문의를 요청할 경우 입원 병원에서 협조

2. 주치의 및 보호자 면담

- 추가진단전문의를 주치의 혹은 보호자와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 이전에 입원병원의 담당자에게 요청
- 주치의 혹은 보호자와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진단입원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담 가능한 치료진 및 환자와의 면담 내용만으로 '진단결과서' 작성
- 주치의 혹은 보호자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와의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는 불가

3. 정신건강의학과 검사의 시행

- 추가진단전문의를 주치의의 '진단 결과서'를 토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병원 출장 전에 입원병원에 해당 검사의 시행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 병원은 추가진단전문의를 방문 시 해당 결과가 열람될 수 있도록 협조
- 검사 시행 및 결과 취합에 시일이 소요되어 추가진단전문의를 통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진단전문의를 사실을 고지하고 미 실시
- 입원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환자와의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는 불가

【환자 입원병원】

① 행정인력

- ▶ (역할) 입원 신고, 방문 진단 지원을 위한 준비, 통지결과 확인 및 조치
- ▶ (입원 신고) 비자의 입원 환자 발생 시 신고서를 입력하고 매칭 가능한 병원을 선택
- ▶ (추가진단 지원) 추가진단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전문의 인적사항과 방문일정 확인하고 그 일자를 병동 의료진에 고지
 - 병동 의료진은 추가진단전문의 방문일을 진단 대상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고, 추가진단 전문 의가 보호의무자 등의 면담 등 추가 정보 요청 시 협조
 - 대상자와 관련기록(차트 등)을 순서대로 대기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진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대상자 및 추가진단전문의 신변 보호

❖ 구체적 협조사항

- ▶ 추가진단전문의가 관리대장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
- ▶ 추가진단전문의의 진단을 위하여 안정된 공간 제공, 차량주차, 최초소견 등 기록, 지원인력 등 제반 사항 협조하는 등 진단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함
- ▶ 추가진단전문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 (결과 확인) 진단 이후 국립정신병원장이 통지한 입원등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입원 또는 퇴원 조치

② 기타 고려사항

1. 면담 대상 환자

- 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하여 입원 당시의 상황 및 입원 필요성에 대해 면담을 할 예정임을 통지. 추가진단전문의의 면담 과정 및 결과 통보 과정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고지. 단, 추가진단전문의의 소속병원 및 성명은 비공개
- 환자가 추가진단전문의의 면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진단 지정일 이후 면담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면담은 불가함
- 면담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환자에게 추가진단전문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면담 환경제공 및 이행할 수 없는 약속 등은 불가
- 대상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격리 혹은 강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격리 혹은 강박이 발생한 이유가 해소되었는지 주치의의 판단에 따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격리

혹은 강박을 종료한 후 면담 실시하고,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 혹은 강박을 유지한 채 추가진단전문의의 면담 진행

- 환자가 알코올 등의 금단 상태에 있거나 지남력 손상 등의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진단전문의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
- 추가진단전문의의 방문 및 대면진단이 이루어졌으나 방문 당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여(진정 상태, 수면, 금단, 인지장애 등) 방문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여 추가진단전문의의 재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방문 사실을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시켜 주며 재방문은 불가함을 설명
- 추가진단전문의의 방문 이후에 퇴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환자에게 권리고지에 포함된 사항(처우개선, 인권위 제소, 인신보호청구 등)을 재고지

2. 추가진단전문의에 대한 협조사항

- 환자를 면담하기 전에 입원병원 치료진이 환자의 질환이나 질병 및 자·타해위험성 등에 대해 추가진단전문의에게 설명 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면담 이전에 열람하도록 협조
- 면담 중에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황이 있다면 미리 추가진단전문의에게 설명하여 만약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
- 추가진단전문의가 방문 전에 보호의무자 혹은 주치의 등과 별도의 면담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3. 면담 환경 준비

- 면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소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필요시 간단한 필기 도구 등 제공
- 면담 시 병원의 치료진이 지근거리에 대기하여 환자와 단독으로 면담실에 입실해있지 않도록 지원
- 환자, 보호자, 추가진단전문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 또는 녹화는 불가

4. 병원 내 기록의 작성

- 추가진단전문의의 방문에 관한 사항 및 면담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의무기록에 표기. 다만, 추가진단전문의의 이름과 소속이 의무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전문의’라고 표기
- 추가진단전문의가 대면진단을 하였으나 격리나 강박·진정·수면·금단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 및 상황에 대해 의무기록에 기록

5. 보호자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

- 보호자 등이 추가진단전문의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진단전문의의 업무는 환자에 대한 대면 면담이 우선임을 설명. 보호자의 면담 요구에 대해 추가진단전문의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보호자 면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추가진단전문의의 결정에 따름
- 추가진단전문의가 보호자와의 면담에 응할 경우 접촉 방식(대면·전화·서면 등) 등의 조정은 입원병원에서 추가진단전문의와 협의하여 결정

마. 추가진단전문의 진단 결과서 작성 안내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결과서]

【신규입원 환자(입원 2주 이내 시점 평가)】

1) 진단명의 기재

- 기존 진단명: 1차진단의의 진단명을 기재함
- 최종 진단명: 추가진단전문의가 판단한 진단명을 기재함

진단은 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임상적인 판단에 의한다. 기존 진단명과 최종진단명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1차진단의 및 추가진단의의 진단명의 일치 여부는 “진단 결과서” 최종소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증상 평가

- 환각/망상/흥분 및 충동성/우울, 무기력 및 정신운동지체/조증/의식장애 또는 혼미/행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의학적 영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 해당영역에 체크함
- 중독질환, 인격장애, 소아청소년 질환, 불안장애, 인지장애 등에 있어서도, “증상”의 해당항목 체크함

3) 치료의 필요성 (need for treatment)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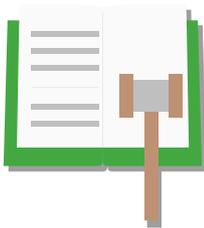
- 해당 정신질환자의 진단명, 증세의 심각도, 입원 당시 및 평가일의 증상, 기왕력 및 치료이력 등을 종합하여 치료 필요성을 판단함
- 환자와의 면담, 1차진단의의 진단 결과서, 기타 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치료 필요성 판단의 근거로 기록함
- 치료의 필요성은 “치료 또는 요양의 필요성 평가 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임상역사의 전문적 소견이 무엇보다 중요함. 평가 점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중증도의 병’ 부터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평가 점수	치료 또는 요양의 필요성
① 정상	없음
② 정상과 병의 경계	낮음
③ 경도의 병	낮음
④ 중증도의 병	보통
⑤ 심각한 병	높음
⑥ 매우 심각한 병	아주 높음
⑦ 극히 심각한 병	아주 높음

4)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 평가

- 입원 당시 정신질환자가 보인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환자 본인이나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자·타해 위험의 추가적인 발생 개연성 등을 종합하여 자·타해 위험성을 판단함
- 환자와의 면담, 1차진단과의 진단 결과서, 기타 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타해 위험성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함
- 자신에 대한 위험 및 타인에 대한 위험을 구분하여 판단함

시행규칙 34조 2항, 자·타해위험의 기준



▶ 법 제43조 제2항 제2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②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④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⑤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타해 위험의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위험, 상습적인 위해/위험의 개연성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시도가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의 예시

- ※ 지난 1년 이내의 자살이나 자해시도 경험이 있음
- ※ 명료하고 구체적인 자살이나 자해시도 계획이 있음
- ※ 지속적인 자살생각이나 자해충동에 몰입하고 있음

② 증상의 악화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예시

- ※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식의 부재, 치료환경의 미비 등의 사유로 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우
-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산의 탕진, 신체적 건강을 돌보지 않음, 위생 및 청결의 문제로 인한 감염성 질환의 위험 증가
- ※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증상의 지속 및 현실검증력과 판단력에 심대한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본인의 신체적 건강관리를 포함 기본적인 자기관리능력에 심대한 장애를 보이는 경우

③ 중독성 약물의 과도한 복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예시

- ※ 제어되지 않는 갈망 등 중독의 문제로 야기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위험성
- ※ 의식장애, 혼미, 금단증상 등으로 인한 자해 위험성 증가 및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 위험
- ※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위험

④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등 타인의 신체나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⑤ 방화, 기물파손,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재산, 명예를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 타해의 경우 아래의 폭력위험의 판단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음

1. 혼란스러움 (황설수설 또는 지남력 상실 상태)	① 없음	② 있음
2. 예민함 (쉽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인 상태)	① 없음	② 있음
3. 시끄러움 (소리가 크게 나거나 소란스러움을 유발)	① 없음	② 있음
4. 신체 위협 (공격적인 자세)	① 없음	② 있음
5. 언어 위협 (협박 또는 위협하는 말)	① 없음	② 있음
6. 물건 공격 (물건에 대한 폭력 행위)	① 없음	② 있음

➔ 6문항의 점수 합계 2점 이상일 경우 폭력의 가능성이 높음

5) 그 밖의 의견

진단 결과서 최종 소견 수립의 근거가 된 다양한 의견들을 기록할 수 있음. 환자, 치료진으로부터 획득하여 판단한 소견들 및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획득한 정보들(보호자와의 면담 혹은 검사의 결과 등)을 기록함

6) 최종 소견

앞서 기록한 증상, 치료 필요성, 자·타해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입소 필요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7) 평가결과의 일치 여부

-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1차 진단 결과서 소견과 추가진단전문의 2차 진단 결과서 평가 결과 모두 입원 필요 소견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 가능
- ㉞ 2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가결과 그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㉜ 추가진단전문의의 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원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즉시 퇴원 조치

【연장입원심사】

- ▶ 서류작성 및 절차 등은 입원 2주 시점에서의 2인 진단과 동일
- ▶ 정신의학적 상태 및 자신의 건강 및 안전 그리고 타인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동일한 관점으로 수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정
- ▶ 다음의 사항들은 진단 결과서의 “그 밖의 의견”란에 기록함

1) 자기관리능력의 장애 및 이로 인한 증상 및 신체질환 악화 가능성

환자의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장애가 높고 사회적 지지체계 및 지역사회시설에서의 관리지원이 불확실한 경우 기존 증상 및 신체질환의 악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

2) 병식 및 다른 형태로의 치료전환 가능성

※ 병식 및 다른 형태로의 전환 가능성 평가는 병동 관찰 기록 및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 기준에 준용하여 평정할 수 있음

① 병에 대한 인식

- 병에 대하여 지적수준의 병식(intellectual insight) 이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증상 및 질환 자체를 완전히 부정, 현재의 치료과정을 망상적 사고로 이해하거나 혹은 과거의 문제일 뿐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치료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

② 외래통원치료 및 자의입원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

- 정신질환자의 증상 정도에 비추어 병식이 있고 지속적 치료계획에 동의하고 치료진이나 보호 의무자의 치료 권고에 협조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검토연장 ‘필요’ 또는 ‘불필요’로 평정하고 종합소견을 작성하도록 함

① 지역사회와 복귀 시 보호의무를 맡아줄 사람

- 단순 존재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② 거주 가능한 주택 또는 입소시설 여부

- 입소시설의 경우 실제로 입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거의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이 퇴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최종 소견의 제시 및 종합 소견의 작성

별지서식 제 16호의 평가 영역 및 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입원연장 필요’ 또는 ‘불필요’로 평정하고 종합소견을 작성하도록 함

5) 평가결과의 일치 여부

-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추가진단전문의 평가 결과 모두 입원연장 필요소견인 경우에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절차 수행
-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추가진단전문의 평가 결과가 일치 한 경우에만 연장청구 가능

2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가. 개요

1) 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입원·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법 제43조, 보호입원)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등(법 제44조, 행정입원)

2) 근거법령

- 법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법 시행령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 법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법 시행령 제21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및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법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 법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법 시행령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 법 시행령 제2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법 시행령 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나. 시행방법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설치)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21조(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안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국립정신병원 ②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심사대상 관할 지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관련)

설치기관		관할지역
1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국립나주병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3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4	국립춘천병원	강원도
5	국립공주병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구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 ④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설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위원의 구성)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통사항

※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

-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퇴원등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조사원

▶ 조사원의 자격

-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② 정신건강전문요원
- ③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다. 입원등적합성심사 절차



1) 신고

-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하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입원등 신고서 (참고서식 제10호)
- ② 증빙서류 첨부: 본인,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등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등록

※ 신고된 건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메뉴를 통해 관리

▶ 신고내용

- ①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 *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43조(보호입원) 또는 제44조(행정입원)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2조(동의입원등) 또는 제50조(응급입원)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 ③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접수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된 입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조사

• 서면조사

- 서면조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입원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대면조사(직권조사) 및 소위원회 심사 회부 전 실시한다.

- ① 서류 검토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신고서, 진단 결과서 등 서류를 각 항목별 점검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 ② 증빙자료 확인 및 보완 요청 : 증빙자료 구비 여부를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체크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증빙자료를 열람하여 사실 여부를 검토한다. 증빙자료 미비사항을 발견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신의료기관등에 보완·제출을 요청한다.

- ※ 정신의료기관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받은 기일 안에 보완·요청 자료를 등록해야 함
- ※ 법 제8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면(직권)조사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신고된 입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원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 ①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 ②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원으로 하여금 입원등을 한 사람을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포함)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때 참고서식17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① 조사일시
- ② 조사원의 소속 및 신분
- ③ 조사내용
- ④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면(직권)조사 한다.

- ① 면담
- ② 자료확인
- ③ 현장조사
- ④ 녹음, 녹화 또는 사진촬영
-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조사원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 ②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 ③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 ④ 그 밖에 입원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에 따라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위법한 사항을 유관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고발한다.

4) 심사

•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 검토내용

- ① 기초조사보고서
- ② 보호입원 신청서, 행정입원 의뢰서
- ③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 ④ 전문의 2인의 진단 결과서 각1부
- ⑤ 대면조사보고서(작성 시)
- ⑥ 기타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 등

② 신고 당시 입원등이 필요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③ 환자의 진단과 증상, 치료경과에 따른 퇴원등 필요성에 관한 사항

▶ (자료 제출 요청)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된 건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이 아님에도 신고된 경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된 건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건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야 한다. 단, 심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각하할 수 있다.
 -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을 하였으나, 입원심사소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심사가 이뤄지기 전 퇴원한 경우
 - 법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6항에 따라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고된 건이 위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심사에 회부하지 않거나 각하한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자 등에게 해당 건이 종결처리되었음을 알리고 해당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입원등 적합성 심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통보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참고서식18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통지된 내용을 심사의 대상이 된 입원등을 한 환자에게 알린 후, 통지서에 서명을 받아 1부는 입원등을 한 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도록 한다.
- 법 제47조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원등을 한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입원연장심사 제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가. 개요

본 지침은 정신건강복지법(이하 “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입·퇴원 관리를 위하여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외래치료 명령 등의 심사를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본 지침은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한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며, 환자의 개인적인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각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퇴원 및 처우개선, 외래치료명령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나. 입원 기간 연장 심사¹⁾ 지침

1) 심사과정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①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 등)

-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인 경우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의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입원기간 연장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영제 18조)
- ▶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장심사를 청구하면서 입원병원을 포함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진단결과서 (별지 제16호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여 작성한다.
- ▶ 국립정신병원장은 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혹은 불일치된 진단여부를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한다.

▶ 해당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추가진단전문의의 평가 결과 모두 입원연장필요 소견인 경우에만 입원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하다.

- ▶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로 보관한다.
- ▶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입원등 통지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결과서(1,2차),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동의서(보호입원인 경우만)와 함께 입원등 연장심사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 1항)

① 퇴원등 또는 임시퇴원등 명령

- 임시퇴원 명령은 시·군·구청장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명령한다. 다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3개월 기간 내에서 재입원을 시킬 수 있다. 법 제63조제1항 및 제3항)

②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 처우개선 조치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작업요법의 적정성 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을 한다.

③ 3개월 이내 재심사

- 3개월 이내 재심사는 퇴원청구를 한 입원환자가 아직 그 증상의 회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지역사회 내 거주나 가족관계에서의 자원 등이 미확보되었을 경우 단기간 내에 재심사를 거쳐 퇴원여부를 다시 결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④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 퇴원청구를 한 환자가 현재의 입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에 동의한 경우 이송을 결정할 수 있다.

- ▶ 시·군·구청장이 이송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환자가 이송되어야 할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44조제4항의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참고할 수 있다.
- ▶ 행정입원 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만 가능하므로 정신요양시설 이송은 불가능하다.

⑤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 입원환자가 퇴원청구를 하였지만 그래도 당분간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입원환자의 청구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유형의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의 통지를 정신의료기관측에서 받은 날부터 당연히 입원은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전환되고, 정신의료기관측에서는 그 입원유형전환명령에 따라 보호·행정입원 퇴원처리 후 환자로부터 자의입원신청서 또는 동의입원신청서를 제출받아 구비해야 한다.

⑥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 ▶ 별도의 외래치료명령청구가 없더라도 입원연장심사청구에서도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치료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⑦ 입원기간연장 결정

④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 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법 제59조제4항)
- ▶ 입원기간 연장 시 심사 결과 보호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때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참고서식 제7호서식)’를 활용할 수 있다.
 - ▶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의 등의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음.

⑤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 ▶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 시켜야 한다. (법 제43조제7항)
- ▶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 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심사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하고,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3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3개월, 6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이 통지 받은 날부터 보호입원은 퇴원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이 명령 또는 조치는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재심사청구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등)

- ▶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1항)
- ▶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에만 해당) ③ 청구내용 및 사유, ④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된 '재심사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0조제2항, 영 제29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입원등 기간연장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청구의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 통지서 사본 (시행규칙 제45조)

⑦ 재심사 회부 (시장·도지사)

- ▶ 시·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제1항)

⑧ 재심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심사내용

- 환자가 적법하게 입원을 하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최초 입원 후 법이 정한 입원연장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입원적합 결정,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입원연장결정 등 각 통지와 권리고지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입원연장과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연장 청구,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등 형식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 환자의 진단과 증상, 그 밖의 일상생활 기능장애의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그리고 환자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처우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당한사유 없는 강박과 격리의 남용, 치료 목적이 없는 약물투여나 강제노역, 각종 권리고지 및 통지의 이행 여부 등 폭행·협박·가혹행위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입원 기간 연장 심사 확인요소



3) 심사방법

-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 및 대면 심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법 제66조)
 -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대면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영 제32조)

- 심사일시
-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성명, 소속, 연락처
- 심사내용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서 이외의 자료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예시와 목록을 병원에 사전 통지할 수 있다.
 -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법 제57조제3항)
 - 입원등 당시의 대면진단 내용
 -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의사 확인
 - 제42조제2항에 따른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사유
 -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 투약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결과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지침

1) 심사과정



①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권 고지 (정신의료기관 등)

- ▶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와 관련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입원한 경우 그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그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 그 방법은 서면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구두로도 설명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

② 심사청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 등)

- ▶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필요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적정성 여부 포함)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55조제1항)
- ▶ 퇴원등(퇴원 또는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 1부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영 제29조, 시행규칙 제43조)

③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1항)

❖ 퇴원등 또는 임시퇴원등 명령

임시퇴원 명령은 시·군·구청장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명령한다. 다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3개월 기간 내에서 재입원을 시킬 수 있다. (법 제63조제1항 및 제3항)

❖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처우개선 조치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작업요법의 적정성 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을 한다.

❖ 3개월 이내 재심사

3개월 이내 재심사는 퇴원청구를 한 입원환자가 아직 그 증상의 회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지역사회 내 거주나 가족관계에서의 자원 등이 미확보되었을 경우 단기간 내에 재심사를 거쳐 퇴원여부를 다시 결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퇴원청구를 한 환자가 현재의 입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에 동의한 경우 이송을 결정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이 이송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환자가 이송되어야 할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특정하여야 함

※ 행정입원 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만 가능하므로 정신요양시설 이송은 불가능함

❖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입원환자가 퇴원청구를 하였지만 그래도 당분간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입원환자의 청구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유형의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의 통지를 정신의료기관측에서 받은 날부터 당연히 입원은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전환되고, 정신의료기관측에서는 그 입원유형전환명령에 따라 보호·행정입원 퇴원처리 후 환자로부터 자의입원신청서 또는 동의입원신청서를 제출받아 구비해야 한다.

❖ 제 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별도의 외래치료명령청구가 없더라도 입원연장심사청구에서도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치료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계속입원등 결정

입원환자의 퇴원청구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그 퇴원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계속입원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계속입원 결정을 한 경우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입원기간에 따른 만료일까지만 계속입원 될 수 있다.

⑤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 지자체장은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조치사항 및 그 조치의 이유)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 ▶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 시켜야 한다.
- ▶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심사 기간 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이 통지 받은 날부터 보호입원은 퇴원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이 명령 또는 조치는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 ▶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심사를 청구 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하고,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3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3개월, 6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 이 명령 또는 조치는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재심사 청구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등)

- ▶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1항)
- ▶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영 제30조)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다른 명령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에만 해당)

- ③ 청구내용 및 사유, ④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된 '재심사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0조제2항, 영 제29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입원등 기간연장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청구의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 통지서 사본 (시행규칙 제45조)

⑧ 재심사 회부 (시장·도지사)

- ▶ 시·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제1항)

⑨ 재심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심사내용

- 환자가 적법하게 입원을 하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입원 및 계속입원연장 당시 등의 상황에서 법이 정한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입원적합 결정,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입원연장결정 등 각 통지와 권리고지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자의입원과 입원연장 등과 관련하여 적법한 형식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 환자의 진단과 증상, 그 밖의 일상생활 기능장애의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처우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강박과 격리의남용, 치료 목적이 없는 약물투여나 강제노역, 각종 권리고지 및 통지의 이행 여부 등 폭행·협박·가혹행위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요소



통지와 권리
고지구비 확인



동의 형식
확인



입원필요성
유지여부 확인



기관의 처우
적정여부확인

3)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대면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법 제66조)
- 심사를 할 때 심사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의견청취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술과 서면 모두 가능하다.
- 심사를 할 때 심사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법 제57조제2항)
 - 의견청취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술과 서면 모두 가능하다.
-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영 제32조)

- 심사일시
-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성명, 소속, 연락처
- 심사내용

- 심사를 할 때 「의료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법 제57조제3항)

- 진료기록부
- 입원등 당시의 대면진단 내용
-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의사 확인
- 제42조제2항에 따른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사유
-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 투약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결과

- 입원적합성신고에 관한 사항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 및 입원연장심사청구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 광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memo

라. 외래치료명령 심사지침 ※ 지침 변경 예정 (2020. 4. 24.)

1) 심사과정



①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 등)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4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보호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가 외래치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명령 청구서’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 지자체장은 외래치료명령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명령을 한다. (법 제64조제2항)

④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외래치료명령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외래치료명령을 수행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4조제3항)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참고)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기관, 치료방법, 내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참고)

⑤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⑥ 조치사항 모니터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래 치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질환자가 외래치료 명령에 따라 치료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지 통원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참고)

⑦ 후속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64조제4항)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4조제4항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4조제5항)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명령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제6항)

-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보호입원)에 따라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 제44조제7항(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법 제64조제7항)

2) 심사내용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작성한 외래치료명령 청구서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를 토대로 외래치료 명령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외래치료명령의 적정성 여부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호의무자의 동의
- 치료순응도, 재발에 대한 과거력,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행동의 경험 및 향후 위험성 등

3)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대면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마.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1) 입원등 기간연장 심사

(1) 심사청구서식

심사청구에 필요한 서식은 ‘입원등 연장심사 신청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결과서’,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동의서’(보호입원인 경우에만 해당),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입원등 통지서’ 등이며, 필요시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서식 설명

▶ 입원등 연장심사 신청서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는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9호서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첨부서류

-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 동의서 1부(보호입원에 한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진단결과서 각 1부
-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참고서식 제8호서식」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1부
- 환자의견진술서 1부(선택사항)

▶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 보호입원에서 입원기간연장을 신청할 때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보호의무자 2인에게 작성하도록 한다.
- 반드시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보호의무자가 1명이었던 경우는 1명)이 입원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면 기존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연장 가능하다.
- 최초에 보호의무자가 1명밖에 없어서 1명이 신청하였으나, 이후 후견인 지정이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등으로 보호의무자가 새로 생긴 경우 1명을 추가하여 연장가능(추가된 보

호의무자 증빙서류 구비 필요)하다.

- 별도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의무자의 개명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보호의무자의 요건, 우선순위는 Ⅱ. 입·퇴원 유형별 안내의 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참조

▶ 진단결과서

진단결과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별지 제16호서식」에 작성한다.

▶ 진단결과서 작성 기준은 Ⅲ. 입·퇴원 관련 제도의 1. 추가진단 제도 참조

▶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라는 통지를, 그 외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불필요’라는 통지를 내린다.
- 통지방법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알린다(‘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참고서식 제8호 서식’]).

▶ 행정입원인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으로부터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를 지자체장에게 오프라인을 통해 제출한다.

▶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서식] 을 참고하여 환자의 입원연장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심사결과통지서식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된 서식으로는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가 있다.

① 서식 설명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심사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

입원기간 연장 심사결과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이때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참고서식 제7호서식)’를 활용할 수 있다.

- ▶ 참고서식 제7호서식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7호서식(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1) 심사청구서식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1호 서식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전자문서로 된 청구서 포함)에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를 적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심사결과통지서식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를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외래치료명령 ※ 지침 변경 예정 (2020. 4. 24.)

1) 청구서식

▶ 외래치료명령 청구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외래치료명령 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한다.

첨부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견서 1부

2) 심사결과통지서식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2호서식]을 참조하여 환자 및 보호자,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의 장, 환자가 외래치료명령을 받기로 결정한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4) 재심사

(1) 심사청구서식

▶ 재심사 청구서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외래치료명령에 불복하는 환자 및 보호자는 '재심사 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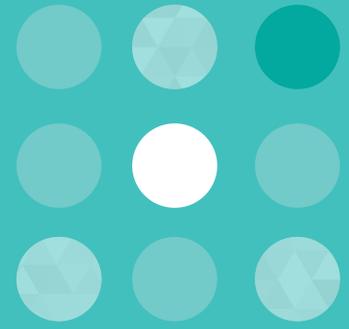


첨부서류

- 심사기간 내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심사결과통지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를 참조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환자 및 보호자,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IV.

부록

1. 법정서식·참고서식
2. 추가청구지침
3. 입·퇴원 절차 관련 Q&A

1. 서식

[법정서식]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교부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최종출신학교			
	전공과목	학위		
자격 및 면허	종별	등급		
	번호	취득 연월일		
수련기간			수련수로 연월일	
수련기관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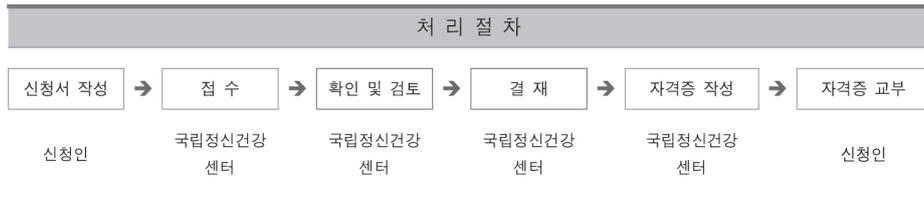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3장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성	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margin: 0;">사진 (3cm×4cm)</p> </div>	
생	년 월 일:		
종	별 및 등급:		
근	거:		
<p>「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인정합니다.</p>			
<p>년 월 일</p>			
<p>보건복지부장관</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50px; height: 5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p style="color: red; margin: 0;">직인</p> </div>

백상지(150g/㎡)

-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 격 등 록 대 장

			작성		담당		
자격번호			자격취득 연월일				사진 (3cm×4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자격근거	최종학력	년 월 일		대학(대학원)졸업			
	학 위						
	수 련(임상 실습)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수 련(임상 실습) 기 관						
관련 면허 (자격)	종별	번호	취득 연월일	합격 연월일	합격번호		
보수 교육	연도	공통보수교육 (이수시간)		지역별 개별보수교육(이수 시간)	비고(면제등)		

210mm×297mm[백상지 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교부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	종별	등급		
	번호	취득 연월일		
신청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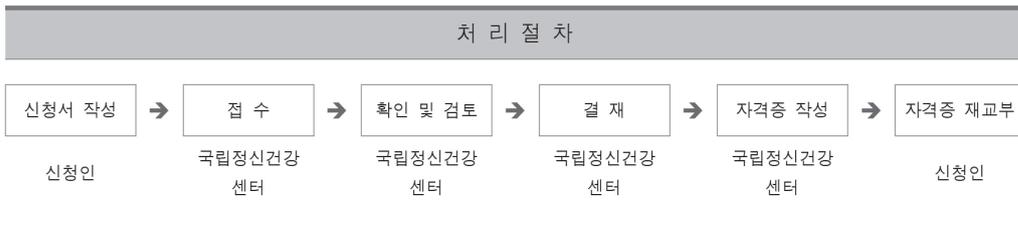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2장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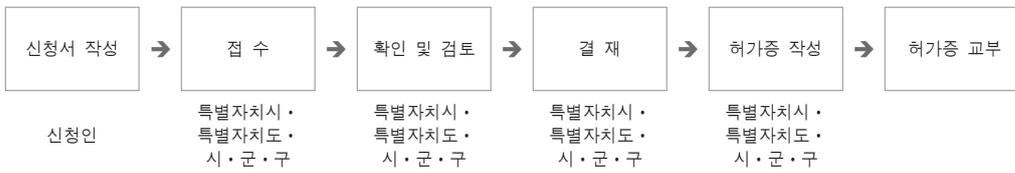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p>신청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사업계획서·수지에산서·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p>수수료 없음</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시설 개요	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남, 여)	
	설치 연월일	입소정원		
				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input type="checkbox"/> 법인명칭 <input type="checkbox"/> 시설명칭 <input type="checkbox"/> 법인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input type="checkbox"/> 시설소재지	변경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허가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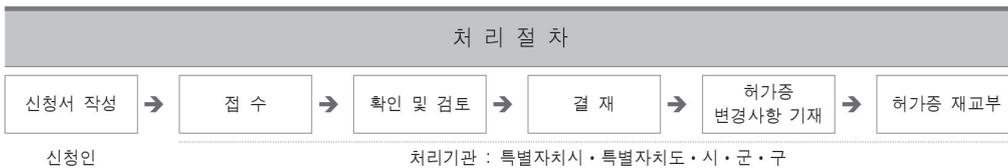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1. 시설의 명칭:			
2. 소재지:			
3. 입소인원:		명	
4. 운영법인명:			
5.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6. 허가조건:			
<p>「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p>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백상지(80g/㎡)

(뒤쪽)

변경사항 기재란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록자	
		직명	성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시설 개요	시설의 명칭	시설장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폐지 []휴지 []재개 연월일	휴지기간	
입소자 조치 계획	귀가	취업	
	전원	위탁	
	기타		
재산활용계획 (별첨 증명서류 참조)			
사유 (폐지·휴지·재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지 또는 휴지 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교부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시설개요	시설의 명칭		사업종별	
	시설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남, 여)	
	설치 연월일	정원	이용	명
			입소	명
시설설비	대지	연면적의 합계		m ²
				m ²
직원	총인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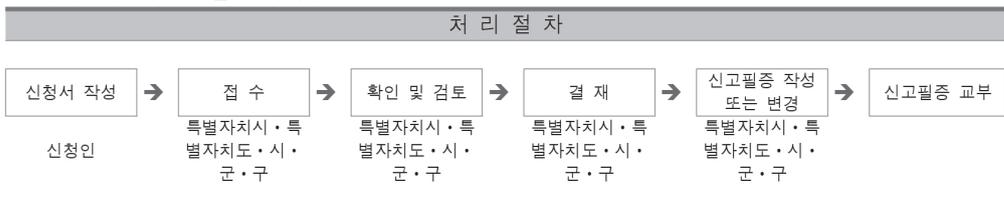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사업계획서·수지에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1. 시설의 명칭:
2. 소재지:
3. 사업종별:
4.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각 종류 중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별표 8의 기준 및 별표 10에서 제시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목적을 갖춘 시설종류로 선택하여 적습니다. 종합시설의 경우 결합된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여 적습니다.
5. 정원: (입소 명, 이용 명)
6. 운영 법인명:
7.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백상지(80g/㎡)

(뒤쪽)

변경사항 기재란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록자	
		직명	성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시설 개요	시설의 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폐지 []휴지 []재개	연월일 년 월 일	휴지기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재활시설의 ([] 폐지, [] 휴지, [] 재개)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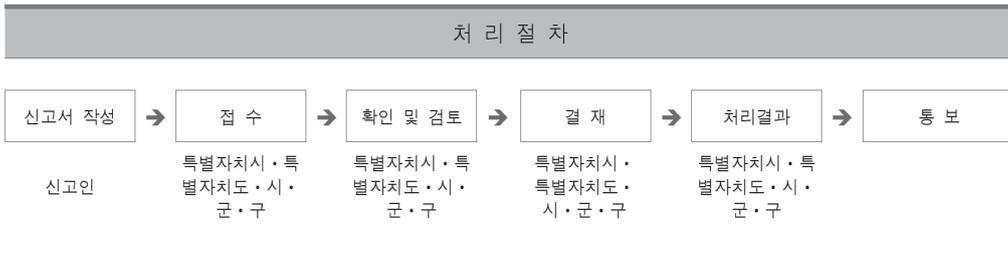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행정 처 분 대 장

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시설(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기간	근거

백상지(80g/m²) 또는 중집지(80g/m²)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보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동의 입원 · 입소	신청인의 []입원 []입소 신청에 동의합니다.		보호의무자 (서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귀 ([] 정신의료기관 또는 [] 정신요양시설)에 [자의 입원 [] 동의 입원 []] 또는 [자의 입소 [] 동의 입소 []]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자의 입원 또는 입소시 첨부서류	입원 또는 입소를 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동의 입원 또는 입소시 첨부서류	1. 입원 또는 입소를 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

(앞쪽)

신청인	보호의무자(Ⅰ) [] 후견인 [] 부양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보호의무자(Ⅱ) [] 후견인 [] 부양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 후견인 있음		[] 후견인 없음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에 위와 같이 []입원 또는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Ⅰ): (서명)

보호의무자(Ⅱ): (서명)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원 또는 입소를 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진단 결과서 1부
------	---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유의사항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는 후견인 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이고,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해당 환자를 상대로 소송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라. 미성년자
 - 마. 행방불명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나.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입원에 대한 신청이나 동의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다.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뒤쪽)

그 밖의 의견	
최종 소견	<input type="checkbox"/> 입원·입소 필요 <input type="checkbox"/> 입원·입소 불필요

년 월 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면허번호			
	성명		서명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항·제6항제1호, 제44조제3항·제6항,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진단 및 보호 신청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신청인	성명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자격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정신건강전문요원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증상·증세 및 행동의 개요		
	※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과의 관계		
※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경찰관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응급입원 의뢰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현재 소재지			
	증상 및 행동의 개요			
※ 해당 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응급입원 동의 의사	면허번호:	위 응급입원 의뢰에 동의합니다.		
	소속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응급입원 동의 경찰관	직위:	위 응급입원 의뢰에 동의합니다.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주소				직업			소속
의뢰 사유						직위	
						성명	인
보호의무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왼쪽 손가락 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 손가락 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 면 압 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p>1. 우리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위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인</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계기관의 장 귀하</p> <p>※ 지문날인은 대상자의 성명·주소·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210mm×297mm[백상지 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퇴원등 사실 통보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남, 여)
	진단명(ICD-10)		입원등 기간
퇴원등 이후 주소 또는 거소			

1. 주요 치료 경과

2. 투약 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

3. 그 밖의 특이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보건소장 귀하

환자 동의서

본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 사실에 대하여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보호의무자 동의서

본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 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 사실에 대하여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이가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 입원·입소자 [] 보호의무자	
입원·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보호의무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시설 명칭		
	주소		

■ 청구내용 (복수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청구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입원(입소)자 성명

[] 보호의무자 성명

(서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접수일		청구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보호입원(입소)·입원(입소)연장심사청구 <input type="checkbox"/> 행정입원(입소)·입원(입소)연장심사청구 <input type="checkbox"/> 퇴원(퇴소)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년	월	일			
통지 대상	[]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남, 여)	
		입원(입소)유형: [] 보호입원(입소) [] 행정입원(입소)			
	[] 보호의무자I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 보호의무자II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 정신건강증진시설	명칭		전화번호		
	주소				

■ 조치사항

■ 조치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귀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위 심사결과 및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 및 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재심사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청구번호: 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의 외래 치료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입원등 기관·시설	명칭	주소	

■ 재심사 청구내용

■ 재심사 청구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외래치료명령 청구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주소	전화번호			
	진단(ICD-10)	입원 횟수(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를 포함합니다)			
	금회 입원일 년 월 일	입원 만료예정일 년 월 일			
	입원유형	[] 보호입원	[] 행정입원		
	입원 전 자타해 행동 여부	[] 있음	[] 없음		
	외래치료기관 추천	[] 청구 정신의료기관	[] 다른 지정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명령 청구기간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위 환자에 대해 아래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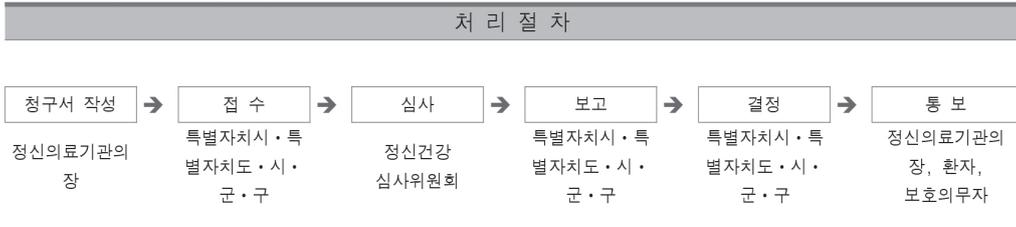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청구인 첨부서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 1부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호서식]

권리 고지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입원기관/ 입소시설	기관/시설명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성명)	
	주소	연락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원/입소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성 심사 청구(법 제46조 제1항)
2.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원 대면조사신청(법 제48조 제1항)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등/퇴소등 처우개선 심사청구(법 제55조 제1항)
4. 퇴원등/퇴소등 처우개선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청구(법 제60조제1항)
5.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법 제69조)
 -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 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안됨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안됨
6.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수용 금지, 입원 또는 입소한 사람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금지(법 제72조)
7.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취면요법·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는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법 제73조)
8.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를 한 사람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법 제74조)
9.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를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으나, 그 요건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며, 그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함(법 제75조)
 - ※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입원(수용)이 위법하게 되었거나 입원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입원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위 각 신청 및 청구 서류는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은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작성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드립니다. 그 밖에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안내는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옆에 비치되어 있는 권익보호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권리 고지 및 조사원 대면조사 확인서

고지일자 : 년 월 일

조사원 대면조사

원함 / 원하지 않음 / 의사 확인불능 ※서명불능 사유:

환자	성명	(서명)	보호의무자 1	성명	(서명)
			보호의무자 2	성명	(서명)

❖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1]

Notice of Rights

Patient's	Name	Birthday	Phone number
	(male, female)		
	Address		
Institution of admission	Name of institution		Head of mental health institu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

We notify you of the following rights of patients admitted p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1. File a petition for examination for legitimacy of admission by the Examination Committee for Legitimacy of Involuntary Admission established in national mental hospitals (Article 46-1)
 2. Request face-to-face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or for examination of legitimacy of Admission (Article 48-1)
 3. File a petition for examination for discharge or improvement of conditions with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in the jurisdiction (Article 55-1)
 4. File a petition for re-examination of the results of examination of discharge or improvement of conditions (Article 60-1)
 5. Protection of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Article 69)
 - No person shall restrict any person's opportunities for education, employment, or the use of facilities, deprive any person of such opportunities, or otherwise treat any person unfairly on the grounds that the person is or was mentally ill. Audio-recording, video-recording, and taking of photographs shall not be performed without consent of the mentally ill person or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ly ill person (or the person who has custody of the mentally ill person).
 - The head of a mental health improvement facility shall not force labor on any person with mental disorder who is admitted to the facility or who uses the facility for any purpose other than medical treatment or rehabilitatio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of a psychiatrist.
 6. Prohibition of detaining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in a place other than facilities designated for the detent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and prohibition of physical violence and assault on persons admitted. (Article 72)
 7. Medical treatment of a person admitted in a mental health institution by electroconvulsive therapy, insulin coma therapy, hypnotherapy under anesthesia, psychosurgery therapy, or any other medical treatmen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medical treatment") shall be determined by a council organized by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with consent from the patient or legal guardian after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special medical treatment. (Article 73)
 8. The head of a mental health institution may restrict the freedom of communications and visitation of any admitted person only within a minimal rang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f a psychiatrist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Article 74)
 9. The head of a mental health institution may impose physical restraints on an admitted person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or protectio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f a psychiatrist, but this is only permitted in cases in which the person clearly poses a risk for their or others' health or safety and there are no other ways except for physical restraint to avoid this risk, and this should be recorded. (Article 75)
- ※ Per Article 3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Liberty Act", persons who are continued to be admitted even after being unlawfully admitted or the reason for admission has been lost may file a petition for relief with the court.
- ※ Each of the request and petition forms stated above are available next to the petition box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ithin a mental health institution. A mental health institution will provide writing supplies and send your completed forms to the corresponding agencies. For other information on patient right protection, see the leaflet for protection of rights available next to the petition box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ithin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Head of mental health institution



Confirmation of notice of rights and intention for face-to-face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ion

Date of notice: YYYY / MM / DD

Intention for Face-to-face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or

Reason for inability to sign

Yes / No / Unable to confirm

Patient	Name	(Sign)	Legal guardian 1	Name	(Sign)
			Legal guardian 2	Name	(Sign)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2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기관(시설)명	위반일자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성명(대표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주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주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시·도·시·군·구 보관용)

발행번호	기관(시설)명	위반일자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성명(대표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주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주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발행번호	기관(시설)명	위반일자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성명(대표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주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주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257mm × 182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4호서식]

입원 등 환자 퇴원 등 의사 확인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입원 등 유형	[] 자의입원 [] 자의입소 [] 동의입원 [] 동의입소

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의 입원 또는 자의입소 환자,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동의입원 또는 동의입소 환자입니다. 이 유형의 입원 또는 입소를 한 환자에게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퇴원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환자 퇴원의사가 있는지 작성한 후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주십시오.

[] 퇴원의사 있음

[] 퇴원의사 없고 계속 입원하길 원함

[] 기타

구체적인 사유 :

년 월 일

환자:

(서명 또는 인)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4]

Intention for discharge of admitted patients'

Patie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Type of admission	<input type="checkbox"/> Voluntary admission <input type="checkbox"/> Admission with consent

You have been voluntarily admitted per Article 41-1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or admitted with consent per Article 42-1 of the same act. Per Article 41-3 of the same act or Article 42-4 of the same act, these patients need to be asked about their intention to be discharged every two months from the day of admission. As such, we ask you whether you wish to be discharged. Please mark your responses below, sign this form, and indicate the current date.

Wish to be discharged

No intention of discharge and wish to continue to be admitted

Other

Specific reason :

Date: YYYY / MM / DD

Patient: (Sign)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5호서식]

([]자의 []동의 []보호) 입원 등 환자 퇴원 등 신청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남, 여)		
	주소		

보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남, 여)		
	주소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환자와 동일하면 기재 생 략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남, 여)		
	주소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또는 동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등을 하기 위하여 퇴원등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퇴원신청의 사유:

※ 퇴원등 신청서를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등을 시키거나, 퇴원거부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환자가 여러 번 퇴원등 신청의사를 밝혀도 퇴원등 신청서는 1회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환자가 작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는 위 퇴원신청에 동의합니다.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5]

Request for discharge of admitted patients
([]voluntary []with consent []by legal guardian)

※ Please put a check mark in the applicable box[]

Requester (Patie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Legal guardian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Requester (This part may be left blank if the patient is the requester)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I (the patient or legal guardian) hereby submit this request to be discharged from your mental health institution per Article 41-2, 42-2, or 43-9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Reason for requesting discharge:

※ When this request for discharge is submitted, the head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must promptly discharge the patient or provide notice of grounds for denial of discharge and right to file a petition for discharge examination to the patient, and even if the patient expresses intention to be discharged for several times during this period, the request for discharge can only be submitted once.

Date: YYYY / MM / DD Time: : (filled out by the patient)

Requester: (Sign)

The legal guardian agrees to the above request for discharge. Legal guardian: (Sign)

To the head of mental health institution or mental health sanatorium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6호서식]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심사청구권 ([]고지서 []통지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남, 여)		
주소			
보호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남, 여)		
주소		환자와의 관계	
입원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담당자	

1. ([]환자 []보호의무자)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하여 퇴원등이 제한되는 동의입원등 환자/보호의무자입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입원을 하여 퇴원등이 제한되는 **보호입원등** 환자/보호의무자입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하여 퇴원등이 제한되는 **행정입원등** 환자/보호의무자입니다.

2. 퇴원등이 제한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환자가 동의입원등 환자인 경우에는 퇴원등 제한 기간 동안 보호입원등이나 행정입원등 환자로 전환될 수 있고, 보호입원등 환자인 경우에는 향후 일정기간 퇴원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퇴원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조사원 대면조사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입원등 환자가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은 경우라면 관할지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호의무자도 관할지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환자/보호자 서명 : 서명

정신의료기관의 장/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남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고, 2항의 빈 칸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 합니다.
-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서식을 한 부 환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한 부에는 환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주거나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7호서식]

(입원 등) 및 입원 등 기간 연장) 통지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남, 여)	
환자 입원 등 일자	년 월 일	입원 등 연장 기간	년 월 일까지
환자 입원 유형	<input type="checkbox"/> 보호입원 등	<input type="checkbox"/> 행정입원 등	

입원 등 또는 입원 등 기간 연장 사유

1. 환자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 3항에 따른 입원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 5항에 따른 입원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4조제 5항에 따른 입원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 6항에 따른 입원 등 기간 연장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2조제 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 되었습니다.

2. 보호입원 등을 한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 9항에 따른 퇴원 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에게 입원 등 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 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입원을 한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자와 보호의무자께 정신의료기관 등의 치료와 요양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자·보호의무자(보호자) 귀하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7]

Notice of (admission and extension of admission)

※ Please put a check mark in the applicable box[]

Patie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Date of admission YYYY / MM / DD		Date of extended admission until YYYY / MM / DD	
Type of admission [<input type="checkbox"/>] Admission by legal guardian [<input type="checkbox"/>] Admission by administration			
Reason for admission or extension of admission			

1. The patient

- [] has been admitted per Article 43-3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 has been given extension of admission per Article 43-5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 has been admitted per Article 44-5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 has been admitted per Article 44-7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 has been given extension of admission per Article 62-2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2. Patients admitted by legal guardian and their legal guardians may submit a request for discharge per Article 43-9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owever, the head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may refuse discharge, if the patient has a severe mental disorder that requires admission and is at a risk for their or others' health or safety. In such a case, the patient or legal guardian may file a petition for discharge examination with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in the jurisdiction.

3. Patients admitted by administration and their legal guardians may also file a petition for examination of discharge or improvement of conditions with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in the jurisdiction.

4. We ask patients and their legal guardians to cooperate with the treatment and care provided by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Date : YYYY / MM / DD

**Head of mental health institution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dministration (Si/Gun/Gu)**

official seal
omitted

To Patient/Legal guardian(caregiver)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8호서식]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남, 여)	
환자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에 대하여

- [] 법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7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등이 가능
- [] 법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7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등이 필요
- [] 법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7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을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즉시 퇴원등이 필요 함을 알립니다.

년 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병원장

인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9호서식]

입원 등 연장 심사 청구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접수기관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급여 1종 []보험 []급여 2종 []기타	입원 [] 보호입원등 연장심사청구 유형 [] 행정입원등 연장심사청구
	주소	연락처		
	진단(ICD-10)	직업		
	금회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입원등 만료예정일 년 월 일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 제출일 년 월 일	
	최초 발병시기	심사청구 총 횟수 회	입원등 횟수(다른 기관 입원한 횟수 포함) 회 ※ 정보파악이 힘든 경우 대략적으로 기술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5항, 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등 연장 심사를 청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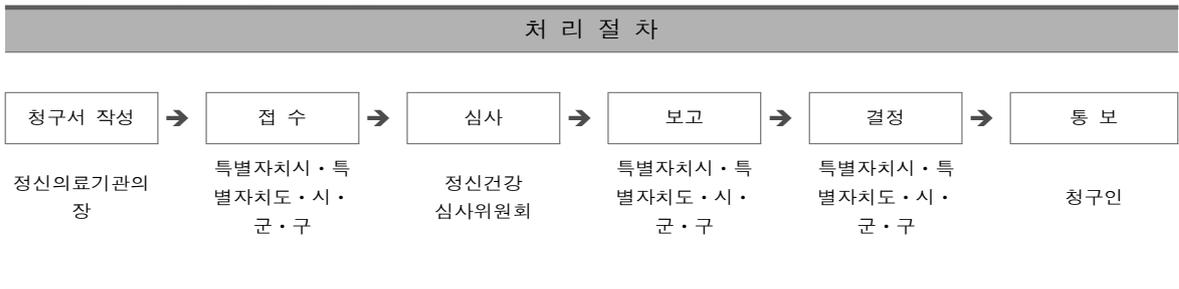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 동의서 1부(보호입원등에 한함)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진단결과서 각 1부 3. 국립정신병원장등이 송부한 『참고서식 제8호서식』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1부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0호서식]

([] 보호 [] 행정) 입원 등 신고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접수기관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신고 기관	명칭	연락처	신고일 년 월 일	
	행정담당자	담당(자문)의사	입력담당자	
	주소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1종 []보험 []급여 2종 []기타	
	주소	직업	연락처	
	진단명(ICD-10)			
	최초 발병시기	최근 발병일	입원 등 일자 년 월 일	
	최근 퇴원 등 일자 년 월 일	최근 퇴원 등 기관·시설 명칭		
	입원 등 횟수(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 포함)	회	기존 입원 등 기간	년 개월
입원 등 유형	[] 보호입원 [] 보호입소 [] 행정입원			
입원 · 입소기관	[] 정신과 의원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요양시설			
증빙서류 구비여부	[] 구비 [] 추후 구비예정 (미비서류:) [] 구비 불가 (사유:)			
조사원 대면조사	[] 원함 (사유:) [] 원하지 않음 (사유:) [] 의사 확인불능 (사유:)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입원을 한 환자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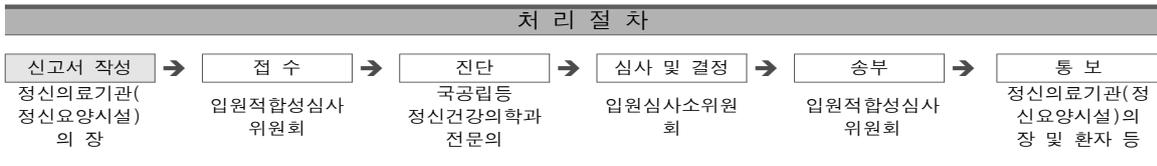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입원 등 신청서 사본 2부(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1부) 2.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가정법원 입원허가결정서 등 사본 각 1부 3. 진단결과서 사본 1부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증상 (복수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환각, 망상 <input type="checkbox"/> 흥분, 혼미 <input type="checkbox"/> 의식장애 <input type="checkbox"/> 우울 <input type="checkbox"/> 조증상태 <input type="checkbox"/> 인격의 병적 상태 <input type="checkbox"/> 행동조절장애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험성의 정도	<input type="checkbox"/> 매우 높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치료·요양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매우 높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환자 병원·시설이송 방법	<input type="checkbox"/> 경찰관 <input type="checkbox"/> 구급대원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응급환자이송단 <input type="checkbox"/> 환자의 자발적 내원 <input type="checkbox"/> 동의입원등 중 전환 (전환일자: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응급입원 중 전환 (전환일자: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응급입원 진행여부	<input type="checkbox"/> 응급입원 진행함 <input type="checkbox"/> 응급입원 진행 안 함		
동의입원등 전환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입원등에서 전환함 (전환입원 일자: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동의입원등에서 전환 안 함		
입원등 예상기간	<input type="checkbox"/> 2주 이내 <input type="checkbox"/> 1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사유:)		
신체적 장애나 질환	<input type="checkbox"/> 있음(내용:) <input type="checkbox"/> 없음		
알코올 및 약물중독	<input type="checkbox"/> 중독 없음 <input type="checkbox"/> 알코올 중독 <input type="checkbox"/> 기타 약물 중독 <input type="checkbox"/> 미상		
보호의무자 I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남, 여)
	주소		환자와의 관계
보호의무자 II (보호입원의 경우만 기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남, 여)
	주소		환자와의 관계
후견인 (보호의무자가 후견인인 경우만 기재)	후견유형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한정후견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가정법원 사전허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사전허가법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후견관할 가정법원 명칭		후견관련 사건번호
환자지정 보호의무자 (필요시 입력)	성명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연락 시도 유무: <input type="checkbox"/> 환자가 직접 연락함 <input type="checkbox"/> 연락했으나 연락 안 됨 <input type="checkbox"/> 지정보호자가 거절		
입원 의뢰기관 (행정입원만 해당)	의뢰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주소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1호서식]

퇴원 등 통지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보호 의무자 I	성명		
	주소	환자와의 관계	
보호 의무자 II	성명		
	주소	환자와의 관계	
환자 최초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환자 퇴원등 일자 년 월 일	

위 환자는 퇴원등 신청을 하여 위 일자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원등을 하였습니다.

-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 소멸
- [] 입원치료 필요성 소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0항에 따라 보호입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들에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서식]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남, 여)
주소			
보호 의무자(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남, 여)
주소			환자와의 관계
보호 의무자(Ⅱ)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남, 여)
주소			환자와의 관계

본인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Ⅰ):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Ⅱ): (서명 또는 인)

입원등 연장에 대한 의견	
보호의무자 성명	1.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현재 상태, 입원등 연장 필요성, 향후 퇴원등 계획 및 퇴원등 후 돌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보호의무자로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의무자 Ⅰ	
보호의무자 Ⅱ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3호서식]

진 단 및 보 호 요 청 서

요청경찰관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담당자(소속)	
	이메일		
요청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		
	증상 및 행동의 개요		
보 호 의 무 자 (보호자)	성명	피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이송방법	<input type="checkbox"/>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input type="checkbox"/>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요청 확인사항	1. 입원요구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의무자 <input type="checkbox"/> 인근주민 <input type="checkbox"/> 담당경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정신질환의 의심: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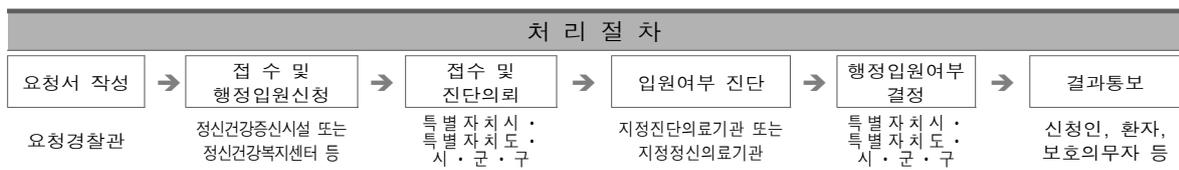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경찰관: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4호서식]

행정입원 의뢰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접수기관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입원 의뢰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원 의뢰인 (보건소장)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책)	
	연락처		입원의뢰담당자	
입원 의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			
	진단명(ICD-10)			
보호 의무자 (보호자)	성명	입원의뢰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지정기관	기관/시설명칭(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4항에 따른 2주의 범위 [] / 제 7항에 따른 3개월 이내 []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입원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입원등 의뢰기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5호서식]

행 정 입 원 해 제 통 지 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입원을 하고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 명칭		
환자 최초 입원 일자 년 월 일		환자 퇴원 예정일 년 월 일	

위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입원을 해제하오니, 환자를 퇴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 계속 입원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2. 최초로 행정입원을 한 날로부터 정한 3개월 이내의 입원 만료일 혹은 입원 기간 연장 후 입원 만료일이 되었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 퇴원을 할 경우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 환자에 대한 입원해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6호서식]

응급입원 통지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입원일 년 월 일	입원기간 만료예정일 년 월 일	
입원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환자의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항에 따라 다음의 각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환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응급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위 입원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의 기간으로 응급입원 되었습니다.
- 환자가 응급입원된 것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고 발견되었으며,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 등의 다른 입원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환자는 응급입원 환자로서 입원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 지나면 입원기간이 만료됩니다. 다만, 응급입원 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보호의무자의 신청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등 의뢰에 따라 다른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응급입원 이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되며,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각 퇴원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보호자)는 문의사항이 있으면 위 입원기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16]

Notice of emergency admission

Patient	Name	Birthday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Date of admission YYYY / MM / DD		Estimated date of termination YYYY / MM / DD
Institution of admission	Name of institution		Phone number
	Address		

We notify the patient's legal guardian (caregiver) of each of the following facts per Article 50-6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1. The patient was admitted in the type of emergency for emergent diagnosis and treatment for three days (excluding holidays) from the date of admission specified above per Article 50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2. The patient was admitted in the type of emergency because of being identified as a person suspected to have a mental disorder with a high risk for their or others' health or safety, but there was no time for other admission processes, such as voluntary admission or admission with consent, so consents were received from a physician and a police officer.
3. The patient was admitted in the type of emergency, and the duration of admission is terminated three days (excluding holidays) after the date of admission. However, the patient may be converted to other types of admission during this period according to a psychiatrist's diagnosis, legal guardian's request, or request for admission by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dministration (Si/Gun/Gu).
4. During admission in the type of emergency, the patient will be diagnosed by a psychiatrist per the order of the head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and will be immediately discharged once acknowledged that there is no need for continued hospitalization.
5. Legal guardian(caregiver) may place a phone call to the institution of hospitalization specified above for any inquiries.

Date : YYYY / MM / DD

**Head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7호서식]

대면조사 사전통지서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대면조사 유형 <input type="checkbox"/> 환자 본인의 대면조사 신청 <input type="checkbox"/>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대면조사		
조사원	소속	이름	연락처
조사 일정	조사대상기관	조사일시	
조사 안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조사원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3.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조사원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 면담, 자료 확인, 현장조사, 녹음·녹화 또는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법 제89조에 따라 조사원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 정신의료기관에서 협조를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			

「정신건강복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비밀과 안전이 보장되는 면담실 구비 등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담당 조사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8호서식]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서명	확인일
	대면조사 유형 <input type="checkbox"/> 환자 본인의 대면조사 신청 <input type="checkbox"/>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대면조사		
환자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알립니다.

입원등 유지

퇴원(퇴소)

- 사유 :

심사 각하

- 사유 :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환자의 입원등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서식]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입원병원명칭
			(남, 여)
주소			

- 본 의견진술서는 입원연장 심사청구서에 첨부되어 입원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심사자료로 제공됩니다.
- 환자 본인이 입원연장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본인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심사에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환자 의견서

환자 본인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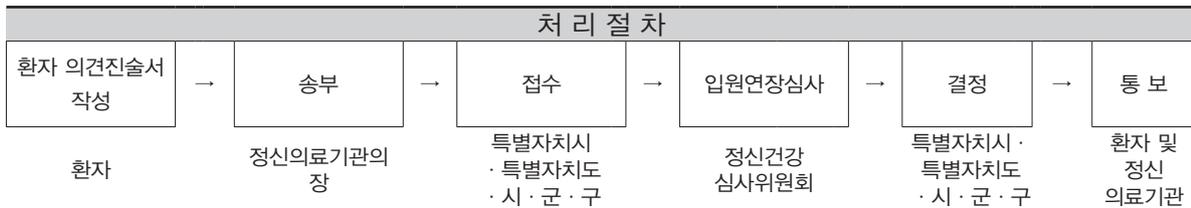
※ 작성방법

-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기록하며, 그 내용은 앞면에 있는 사항 외에도 입원 경위, 입원연장 또는 퇴원이 필요한 이유, 향후 치료계획 및 생활계획 등입니다.
- 의견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없는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간호사를 의미합니다)이 환자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구두로도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서명 후 제출합니다.

○ 환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한 사유:

작성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성명:	(서명)
-----	-------------------------	-----	------

환자 의견진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일
(서명)

환자: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수가 청구 지침

① 시범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가. 근거법령에 따른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입원 및 입원 연장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의 입원확인이 필요함. 이에 환자가 재원한 기관의 의뢰를 받아 방문한 의사에게는 ‘치료입원확인료’를, 환자가 재원한 의료기관에는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를 산정토록 함.

2. 사업대상

가. 대상 요양기관

-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이 가능한 요양기관

나. 대상 의료인

-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관련 치료입원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방문의사)

다. 대상 환자

- 보호입원 혹은 행정입원을 통한 치료 확인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3. 사업기간

- 2017.5.30. ~ 본 사업 실시 전까지

② 시범사업 세부지침

1. 요양급여 기준

가. 급여의 대상

- ① (대상 의료인)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관련 치료입원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하 방문의사)
- ② (대상기관) 보호입원 혹은 행정입원이 가능한 요양기관
- ③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보훈 대상자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의료지원 대상자 중 보호입원 혹은 행정입원에 따른 진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나.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① (건강보험) 시범사업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1항의 [별표2] 1.가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따른다.
※ 산정특례 등 별도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경우 동법 [별표2]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1항의규정 (입원진료 준용)을 따른다.

2. 산정지침

- 가.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방문의사가 입원 확인시 산정한다.
- 나. ‘치료입원확인료’는 상기 ‘가’항에 방문의사가 의뢰기관으로 방문하여 환자상태를 입원의 필요성 및 자해·타해 위험성에 대한 자료검토와 다양한 정신과적 면담기법 등을 통해 입원여부 확인 및 진단결과서를 작성 후 제출한 경우, 방문의사의 소속된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 다.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방문의사의 진료를 위해 의뢰기관에서 진료장소 제공 및 진료기록 공유, 환자 상태를 고려한 진료간 안전요원 배치, 진단결과서를 포함한 각종 기록물 보관 등의 행정지원활동을 한 경우, 환자 소속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 라. 동일환자의 동일목적 입원확인을 최초 확인 후 반복시행 하더라도 1개월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마. ‘치료입원확인료’와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공휴·야간·소아·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 ‘치료입원확인료’ 및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환자재원 요양기관에서 일괄 청구하며, 관련비용은 요양기관간 상호 정산한다.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점)
치료입원 확인	-	치료입원확인료	-
	IA901-A903	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 제 43 조제11항 및 법 제44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 35조에 의해 부득이하게 같은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의한 입원 확인시에는 소정점수 290.78점으로 산정하며,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확인3))	퇴원절차
	IA911-IA913	가. 상급종합병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확인3)	988.37
	IA921-IA923	나. 종합병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확인3)	898.03
	IA931-IA933	다. 병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확인3)	807.16
	IA941-IA943	라. 의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확인3)	726.96
	-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
	IA910	가. 상급종합병원	127.76
	IA920	나. 종합병원	107.27
	IA930	다. 병원	85.15
	IA940	라. 의원	64.86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청구원칙

1)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치료입원확인 시범사업 수가 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2)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를 합하여 작성

※ 의료급여의 경우 정액 명세서에 합하여 작성

3) [면허종류, 면허번호]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 치료입원을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4) [특정내역 기재]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 출번호단위 특정 내역구분코드 JS008(위탁진료)에 [의뢰 받은 요양기관기호/치료입원 확인일]을 기재한다.

5)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 2019년 단가 기준

항목	세부작성요령										
치료입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며, ‘치료입원 확인료’는 면허종류, 면허번호, 특정 내역란에 의뢰받은 요양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을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치료입원확인 필요 환자가 발생한 의원에서 종합병원에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한 경우 										
	출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022	01	03	1	IA921	67,260	1	1	67,260	1	12345
	0023	01	03	1	IA940	5,410	1	1	5,410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출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S008			11100010/20170603			
	주) JS008 : ‘치료입원확인 위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명세서 “X항 01목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란 에 기재하며, ‘치료입원확인료’는 면허종류, 면허번호, 특정내역란에 의뢰받은 요양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을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치료입원확인 필요 환자가 발생한 의원에서 종합병원에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한 경우 										
	출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022	X	01	1	IA921	67,260	1	1	67,260	1	12345	
0023	X	01	1	IA940	5,410	1	1	5,410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출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S008			11100010/20170603				
주) JS008 : ‘치료입원확인 위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S008	위탁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받은 요양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 9(8)/ccyymmdd

•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건강보험)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명세서 “X항 01목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란에 기재

라.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 1) 시범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 2)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중 진료 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③ 시범기관의 준수사항

1. 현황신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지정받은 기관의 현황 자료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한 신청 및 변경 자료로 같음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별도 현황신고 하지 않는다.

2. 자료제출 의무

시범사업 기관은 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재 조치 등

- ①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사업계획서 등의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의 경우 보장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시범기관은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수가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단(의료급여의 경우 보장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입·퇴원 절차 관련 Q&A

이송

Q1

보호, 동의, 자의입원과 관련해서 병원 측에서 후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해도 되나요?

A1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서, 병원 측에서 환자를 후송 시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 제27조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대법원 판결: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 7134 판결[정신보건법 및 의료법 위반 등]).

☞ 실제 사례: 정신병원의 직원들이 서울역 등에서 노숙인에게 담배나 생필품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가 운행하는 차로 노숙인을 실어 병원으로 데려와 자의 입원시킨 것을 이유로 정신병원의 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위 대법원 판결)

입원유형

Q2

다른 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때 행정입원이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A2

- 행정입원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한 입원은 i) 동의입원, ii)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모두 환자가 입원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동의입원은 퇴원신청 후 72시간, 응급입원은 입원 후 3일 이내) 행정입원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72시간(동의입원에서 전환) 또는 3일(응급입원에서 전환) 이내에 전환하여야 하므로 그 전환완료시점까지 환자는 행정입원이 가능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함)되어 있어야 하고,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의뢰서[참고서식 제14호]가 환자가 행정입원된 정신의료기관으로 송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정정신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동의입원,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행정입원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개시되고, 비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온 경우라면 환자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입원된 날부터 행정입원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3

동의입원된 환자가 퇴원을 원하지만 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이 명확하여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 절차만으로 퇴원후 보호입원으로 재입원 처리가 가능할까요?

A3

- 자의입원과 달리 동의입원된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72시간 동안 퇴원 제한이 가능합니다.
- 퇴원 제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원 신청 시점의 72시간 이내로 [참고서식 제 6호]에 따른 퇴원거부 통지를 하신 후 보호의무자 2인의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호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에는 실제적인 퇴원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4

자의입원환자가 퇴원을 요구할 경우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퇴원처리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입원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보호입원으로 진행된다면 입원유형 전환의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4

-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퇴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자의입원일 경우 입원유형을 동의입원이나 보호입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환이 아닌 실질적인 퇴원과 입원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 상태 및 입원 유형에 따라 적절한 절차 및 서류를 갖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제41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하면 형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제84조 제2호).

📖 법원의 판결례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퇴원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퇴원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자의입원에서 보호입원으로 전환의 위법)

2013. 9. 29. 자의입원한 환자가 2013. 10. 14. 병원장에게 퇴원을 요구하자 같은 달 16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입원으로 전환해서 환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여 이에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검찰총장에게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함(국가인권위원회 2016. 5. 13. 결정 15진정0905500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입원형식 변경 등 인권침해).

Q5

비자의 입원에서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입원유형 전환이 가능할까요? (전환 시에 진단결과서 재작성 여부 / 전문의 대면 진료 날짜가 입원신청서 상의 날짜와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A5

- 비자의입원(보호, 행정입원)에서 자의나 동의입원으로 전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재입원을 위해서는 입원 유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며 진단결과서 등 관련 구비서류 역시 다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진단결과서는 퇴원 이후 실제로 대면진단이 이루어진 날과 입원신청서를 작성한 날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면진단일은 입원신청서 작성일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앞선 날짜가 될 것입니다(절차 상 대면진단 - 입원 신청 순).

Q6

현재 보호입원으로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의무자 중 1인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서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A6

- 보호입원의 지속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입원의 연장에 동의해 줄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모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퇴원 처리 후 행정입원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 이 때 [별지 제17호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참고서식 제14호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는 날로부터 행정입원이 인정됩니다. 이후는 행정입원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Q7

응급입원 시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정보이용 동의서의 동의 획득이나 신분증이 없어 첨부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등본의 첨부가 꼭 필요한가요?

A7

- 응급입원의 경우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과 달리 그 법령이나 서식에 응급입원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정신의료기관이 제출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응급입원을 포함하여 모든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신상정보(이름, 주소, 보호의무자 등)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법 제51조 제1항).
- 이후 응급입원 중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등으로의 전환을 위해 입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Q8

자살시도로 인해 출동한 경찰의 의뢰에 의해 응급입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보호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8

-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하여 진행하는 입원유형으로, 보호의무자의 퇴원요청과 무관하게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입원치료 필요시 3일 이내 기간 동안 입원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타 유형(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으로 입원유형을 전환하여 입원 치료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의 퇴원여부는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정신건강전문주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릅니다.
- 응급입원한 자살시도자가 퇴원할 경우 다시 자살시도 등의 가능성이 있어 자·타해 위험이 높은 상태라면,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자의입원이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입원한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Q9

자·타해 위험이 있어 응급 입원한 환자의 경우 3일 이내에 자·타해 위험의 소멸로 퇴원을 하게 될 때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퇴원 서류가 있나요?

A9

• 정신건강전문의 진단 결과 입원유지 필요성이 없을 시에는 즉시 퇴원 가능하며 별도로 받는 응급입원 퇴원서류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과 상관없이 환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원하는 경우라면 환자의 의사에 의한 퇴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반권고 퇴원(DAMA;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신청서.

Q10

경찰관이 응급입원 의뢰를 하였는데 정신과 의사가 대상자의 증상(난폭, 욕설, 시비 등)이 정신과적 증상이 아닌 성격적 특성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것 인가요?

A10

• 응급입원의 입원여부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릅니다.
•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에 급박하여 진행되는 입원유형으로, 보호의무자의 퇴원요청과 무관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일의 기간 이내에 타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자·타해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Q11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한 경우 ‘2인 이상의 전문의에게 지체 없이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에서 ‘지체 없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A11

•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진단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때 전문의의 진단은 '진단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로 작성하여 통지한다.
• 위의 해석은 입원 후 2주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 결과를 국립정신병원장이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지체 없이’는 ‘즉시’와 다르게 지체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2

행정입원한 환자가 타과 질환으로 인해 타병원으로 후송되어 행정입원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어느 기관에서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진단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12

-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입원과 퇴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정신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의 허락 없이 이송이나 퇴원을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환자의 현재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행정입원 신청(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Q13 행정입원 해제는 꼭 지자체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A13

- 행정입원환자는 원칙적으로 퇴원이 제한됩니다. 행정입원환자는 보호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지체 없는 퇴원의무규정(법 제43조 제9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은 행정입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이 입원해제를 하여야만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2조 제1항). 행정입원의 경우 그 퇴원결정의 주체는 환자나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입니다.

행정입원환자의 퇴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i) 시·군·구청장의 입원해제명령에 따른 퇴원(법 제62조 제1항)
- ii) 행정입원의 요건결여에 따른 퇴원(행정입원 신청권자 결격, 정신질환자 아님, 자·타해 위험이나 입원치료 필요성 소멸)
- iii) 치료입원이나 입원연장 요건의 미비에 따른 퇴원(진단의사의 미진단이나 입원불필요 진단, 2인 진단의 불일치 소견, 입원연장청구 미이행 등)
- iv) 입원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원(진단입원 14일, 치료입원 3개월, 입원연장 기간만료 등)
- v) 입원심사기관의 퇴원 등 명령(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판정이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퇴원명령 등)
- vi) 행정기관의 퇴원 등 명령(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 등)
- vii) 법원의 퇴원명령(인신보호재판에 따른 수용해제명령 등)

위의 퇴원방식을 구분해 보면, 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청(퇴원청구)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나 법원이 퇴원(수용해제)을 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입원결정의 주체인 시·군·구청장이 입원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의무자 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퇴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시·군·구청장에게 퇴원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인신보호재판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퇴원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회복되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자·타해 위험성이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하여 환자의 입원해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Q14

환자의 발견지와 주소지,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다를 경우 행정입원 의뢰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A14

- 행정입원은 원칙적으로 환자 발견지의 관할 지자체로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견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행정입원 의뢰를 한 경우,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주소지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을 요청한다면 처우개선청구에 그 요청을 하도록 하여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이송결정을 하도록 하여 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이송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Q15

행정입원 시 어떤 시점에 입원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또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5

- 환자와 보호의무자 모두에게 [참고서식 제7호 입원등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5항과 제8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며 입원(진단을 위한 입원,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 연장이 결정되었을 때 통지하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5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없이 이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8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 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Q16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는 행정입원이 불가능한가요?

A16

-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는 행정입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진단 및 보호 신청은 가능합니다.
- 진단 및 보호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를 하고, 이후 정신건강전문의로부터 진단결과서를 받은 지자체는 지정 정신의료기관으로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합니다.
-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라면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진단결과서

Q17

환자 입원 시 담당주치의 부재로 인해 다른 전문의가 대면진단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1차 진단결과서는 어떤 전문의가 작성해야 하나요?

A17

-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를 보호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진단 한 전문의가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Q18

외래나 퇴원 시에 전문의가 대면진료하고 1개월 후로 입원지시를 한 경우 입원 당일 전문의 대면진단이 또 필요한가요?

또는 반대로 전문의가 대면진단 후 입원지시를 하고 진단결과서를 작성했지만, 환자의 사정으로 당일 입원이 어려워 이후 입원을 진행하는 경우 진단결과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18

- 정신건강복지법 제 68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연장이 불가합니다. 이때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처럼 환자가 입원 전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통해 입원을 권고 받았다면, 그 진단서의 유효기간 30일 이내에 실제 입원 시 대면진료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의 대면진료를 통한 진단결과서 발부로 입원 후에는 그 진단서가 유효하다 할지라도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Q19

매칭된 기관에 추가진단전문 의 대면진단 신청을 했으나 반려 처리되었고, 현재는 신청 버튼이 비활성화되고 신청가능건수 역시 0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9

- 2차 진단 마감일 3일 전부터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일 경우에만 자체진단 전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 만일 지정진단의료기관이 아니라면 지정진단매칭기관을 늘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칭기관은 5개까지 가능합니다.

Q20

정신요양시설은 보호입소 시에 반드시 촉탁의의 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입소가 가능할까요?

A20

- 보호입원(소)은 입소 전 전문의의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소 전에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며, 대면진료 후 입원이 필요할 경우 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보호입소 시, 1차 대면진료는 요양시설 소속 촉탁의에게 받아야 합니다.
- 진단결과서는 유효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요양시설의 촉탁의가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대면진료 후 발급받으시거나, 요양시설에 촉탁의가 근무하는 날 대면 진료 후 당일 진단결과서를 받아 입소 가능합니다.

Q21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작성된 진단결과서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A21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신 1차 진단결과서를 인쇄하여 의무기록지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2차 진단결과서는 추가진단전문이가 소속된 병원에서 인쇄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 추가진단전문이가 행정입원의 경우처럼 동일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1차 진단결과서와 2차 진단결과서 모두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보호의무자

Q22 보호의무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22

-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 976조에 따릅니다.
- (단,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안내의 판례를 참고하되, 부양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한 바에 따르고, 협정이 없는 경우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오도록 해 선순위 부양의무자의 의견에 따름)
- 현실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해주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보호의무자)들 사이에 입원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양의무자 순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보호입원신청을 받고 있으나,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이 선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에서 누락되면 안 되므로 후견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Q23

보호의무자가 역할을 거부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나요?

A23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제3항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본인이 부양의무자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그러한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참고서식 제19호] 보호의무자 포기(거부) 소명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이 때 모든 부양 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본인의 서면거부 및 포기의사 확인이 곤란한 경우 [참고서식 제20호]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며 장기간 연락두절 등으로 보호의무자 본인의 서면 거부 및 포기 의사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확인절차에 준하여 지자체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한 부모 가구로 부(또는 모)가 재혼 등 이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부양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Q24

정신장애 3급인 보호자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24

- ‘정신장애 3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신장애 3급으로 인해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Q25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25

-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혼 조정 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보호의무자로 보호입원 하였다면, 입원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퇴원 후 다른 입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보호의무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추가적으로, 소송 중인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은 소송여부를 구두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보호의무자는 증빙의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을 치하한 경우와 소송 결과가 불처분 혹은 형량 없음으로 판결났다고 하더라도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Q26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중 단기(하루라도) 입국했던 기록이 있으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요?

A26

- 보건복지부 고시(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해 있는 상황에서는 보호의무자 지위가 회복되어 보호의무자로서 보호입원신청이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하던 중 잠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체류중인 국가로 돌아갔다면 장기간 해외 체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볼 것이어서 체류중인 국가로 돌아간 이후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의무자의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Q27

법 제3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의료기관의 원무행정담당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덧붙여 위의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보호입원을 진행한 경우 의료기관과 진단의에게는 책임은 없나요?

A27

- 보호입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청인지 여부를 객관적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신청서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형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 결격사유 여부도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결격사유 여부도 입원을 신청하는 보호의무자 2명에게 자신들이 결격사유가 없는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보호입원 요건을 진단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만이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입원서류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Q28

형제자매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생계를 같이해야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무엇이며 입원 중에 형제자매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 입원연장심사를 위한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있나요?

A28

- 형제자매(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방계혈족(방계가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본 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세대는 다르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형제자매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환자가 병원에 입원 할 당시에는 환자와 주소지가 같았으나, 입원 연장 시 보호의무자의 주소지가 변경 된 경우에는 신상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호의무자의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고 환자의 입원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제자매에 의해 연장청구가 가능합니다.
- 또한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3개월 이상의 생활비 지원) 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통장 등)가 있어야 하고, 위의 내용(생계비 지원 금액, 빈도 등)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29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족이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확인될 경우 둘 다 보호의무자로 가능한가요? 두 서류 중 무엇을 우선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A29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타는 것이어서 함께 사는 사람을 나타내주는 주민등록등본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없는 친족(예컨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우선적용 해야 하는 서류의 구별 필요성은 없습니다.

Q30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성년자는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나요?

A30

- 정신건강복지법에서의 미성년자는 민법을 따릅니다.
- 민법 제4조에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19세는 만 19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 만일 입원 기간 중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되어 보호의무자 조건을 획득한 경우에는 입원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보호의무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Q31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아무도 없고, 동일 주소 상에 조카와 형수가 있습니다. 조카는 혼자서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길 원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31

- 주민등록등본 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의무자 2인(조카와 형수)으로 해서 보호입원을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Q3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고, 등본 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며 사실혼 관계일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32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하는 관계는 보호의무자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가진 보호입원 신청권한이나 연장동의권한은 법적인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에게만 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특히 사실혼의 경우에는 언제든 일방적 파기가 가능하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아 보호입원신청이나 연장동의가 가능한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33

보호의무자로서 환자의 시부모(또는 장인, 장모)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으로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가능하다면 환자와 시부모(또는 장인, 장모)가 같은 주소지가 아닐 경우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A33

- 민법상 부양의무자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모두 부양의무자가 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의무자가 됩니다(민법 제974조).
- 따라서 시부모가 며느리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고, 장인 장모가 사위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며느리도 시부모의, 사위도 장인 장모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시부모나 장인 장모]과 상대방[사위나 며느리]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Q34

가정폭력(할머니에 의한) 피해사실이 있는 아동이 불안 증세와 자해 시도로 응급입원 하였습니다. 보호자인 할머니와 아버지는 입원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호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정입원 추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34

- 행정입원은 보호의무자 유무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의, 동의, 보호, 행정입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의무자(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갖고 있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자의입원보다는 동의입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덧붙여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보호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에 의해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5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 후견자격(후견유형) 및 필요(증명)서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A35

- 보호입원의 신청은 후견인도 할 수 있으나 모든 후견인이 아니라 후견법원(가정법원)으로부터 입원신청권한을 부여받은 후견인만이 가능하며, 그 권한부여 외에 입원 전에 피후견인에 대한 입원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위 규정은 한 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준용되나, 특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준용규정이 없음]
- 피후견인이 입원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우선순위가 있는 보호의무자이므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 있는 후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입원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등기 사항 증명서나 심판서 등)와 후견법원(가정법원)의 입원허가결정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때 입원허가결정은 후견 등기사항에 명시되어있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증빙서류는 입원신고 시 스캔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알려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후견법원(가정법원)에 입원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은 부양의무자는 아니지만 환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지위와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가족인 부양의무자보다 법령상 선순위 보호의무자이기 때문에 보호입원을 시킬 때는 후견인의 입원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있음에도 다른 가족들만으로 입원시키려 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에게도 입원신청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보호입원신청을 할 수는 없고, 다른 부양의무자인 가족 1명과 함께 입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Q36

보호입원에서 최초 입원 신청을 했던 보호의무자에서 다른 보호의무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A36

- 환자를 입원시킬 때 여러 보호의무자가 있어 그 중 2명이 보호입원 신청을 하여 입원을 시킨 후 그 중 1명에게 사망이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라도 그 입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유효한 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나 결격사유의 발생 외 보호의무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퇴원 후 재입원의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 입원신청을 한 보호의무자에게 사망이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보호입원신청을 한 보호의무자가 입원연장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법 제43조 제6항 제2호). 입원신청 보호의무자가 입원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입원기간 만료 시 퇴원되어야 합니다.
- 만약 최초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사망이나 결격사유가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면 입원연장은 입원신청한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Q37

동의입원에서 입원 당시 신청서를 작성했던 보호의무자가 아닌 다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퇴원신청서 작성)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

A37

- 동의입원에 동의하였던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아니라 다른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거나 퇴원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모든 보호의무자에게 동의입원에 대한 동의권과 퇴원신청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보호입원의 경우에도 퇴원신청은 입원신청을 한 보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Q38 보호입원에서 보호의무자 2인 중 1인이 부양의 이행을 포기한 경우에서의 입원연장 동의는 나머지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할까요?

A38

- 환자를 입원시킬 때 여러 보호의무자가 있어 그 중 2명이 보호입원 신청을 하여 입원을 시킨 후 그 중 1명에게 사망이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라도 그 입원기간 만료(3개월 또는 6개월)까지는 유효한 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원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 새로운 보호의무자 1명이 결격자를 대신하여 추가되어야 합니다. 보호의무자가 부양의 이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면 보호입원 신청인 1명에 의한 입원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때 부양 이행포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롭게 추가된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9 환자의 유일한 혈족에 해당하는 보호자(아들)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 기본 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39

- 환자와 보호의무자(아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 등본이나 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Q40 입원에 동의하지 않은 보호의무자가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40

-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가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는 모두 퇴원 및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입니다.

Q41

직계존비속에 의한 2인 보호입원 중 보호의무자 1명이 이민이나 사망 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른 직계존비속 중 1명을 추가하여야 할 때, 입원 연장시 보호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추가된 보호자만 보호입원신청에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입퇴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41

- 최초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사망이나 결격사유가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면 입원연장은 입원신청한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연장가능합니다.
- 이 때 사망 또는 이민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새롭게 추가될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기존 1명과 함께 입원등기 간 연장에 동의와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Q42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 기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42

- 지자체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사항을 [별지 제 22호]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결과통지서에 작성하여 정신의료기관, 청구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내에도 연장심사를 받지 못하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15일 내에 결정한다는 의미는 명령이나 결정의 도달일까지를 15일로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나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15일로 한 것입니다. 그 명령이나 결정만 15일(부득이한 사유로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해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 25일) 이내로 발령하면 됩니다.
- 15일의 기간은 민법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여 접수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입원 연장

Q43

보호입원 대상자의 입원연장 심사 결과, 정신건강복지법 제59조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3개월 이내 재심사" 로 결정된 경우 추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43

- 지자체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3개월 이내 재심사를 내리는 경우는 입원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관한 자료는 모두 갖추었지만 즉시 퇴원할 경우 주거지가 확보되지 않거나 6개월의 입원연장을 하기에는 환자가 그 안에 회복가능성이 있어 1, 2개월 내에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재심사 결정은 기존의 연장청구를 바탕으로 심사기일에 즉시 결정을 하지 않고서 추가로 심사기일을 한 번 더 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새로운 연장청구와 서류를 다음 심사기일에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재심사기일까지의 환자의 진단이나 증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결과서와 기존의 재심사결과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심사기일 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44

정신병적 증상 및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보호입원 중인 환자가 입원일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상이 재발현 되었습니다. 현재 입원연장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만기 시점에서 퇴원 후 당일 재입원이 가능할까요?

A44

- 입원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입원 만료일 직전 여전히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입원 만료일 이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하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퇴원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퇴원처리 후 보호입원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호입원기간 만료 후 실제 퇴원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위법한 입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Q45

퇴원심사, 입원연장심사 청구 시 병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A45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할 때에는 법 제 57조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입원연장심사의 경우, 병원에서 제출한 [참고서식 제9호]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를 접수해야하며, 입원등 연장심사 청구서에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 동의서 1부(보호입원등에 한함), 1차·2차 진단결과서, 치료를 위한 [참고서식 제 8호] 입원등 통지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및 첨부 서류를 기반으로 입원등 연장 심사를 합니다.

Q46 입원연장심사 청구는 입원기간 중 언제부터 진행을 해야하는거죠?

- A46**
- 보호입원의 경우 입원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1차 권고서와 2차 권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차 권고서는 환자의 주치의가 작성하는 것으로 청구마감일 2개월 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 행정입원은 3개월 전까지 연장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Q47 입원연장심사 청구 시 입원신청을 했던 보호의무자 2인 중 한 명이 장기 해외 출장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하러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47**
- 입원연장 시에는 입원신청을 했던 보호의무자가 [참고서식 제12호]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하지만 위의 경우 입원 신청 보호의무자 중 1인이 3개월 이상 해외체류중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면, 입원연장은 보호의무자 1인 결격사유 관련 증빙서류와 입원신청한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어 추가되었다면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Q48 현재 동의입원 중으로 자살사고 지속되어 환자, 보호의무자 모두 입원 유지 의사를 표하는 상태입니다. 동의입원에서의 입원연장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48**
- 동의입원은 별도의 연장심사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환자의 퇴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49

입원연장 심사 청구 시 제출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 결과서 유효일은 언제까지인가요?

A49

- 입원과 연장시의 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의 의미는 다릅니다.
- 입원시는 진단결과서(주치의) 유효기간이 30일입니다. 추가 진단의 경우에는 2인의 진단결과서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을 통하여 통지를 받는 것입니다. 연장시에는 입원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진단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2인 진단을 받아 만료일 1개월이 되는 날 안에 지자체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Q50

입원연장심사 후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를 통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별도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A50

- 환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의 통지를 개별적으로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 대한 개별적 입원연장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수령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은 이를 전달해 줄 의무가 있으며(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8항), 그 전달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5호).
- 환자가 입원기간연장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지서에 집적서명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통지수령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 그 의무이행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51

환자의 주소지와는 다른 시에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의뢰를 하여 행정입원 상태인데, 퇴원심사 청구나 입원기간연장심사는 어느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A51

- 행정입원은 병원 소재지인 지자체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행정입원 연장심사를 합니다.

Q52 입원기간연장과 계속입원연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52**
- 입원기간 연장은 참고서식 제9호 입원등 연장심사청구서를 통해 기간연장 청구를 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계속입원 연장은 환자가 참고서식 제12호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를 통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계속입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Q53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가능한가요?

- A53**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 중 하나(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54 연장심사 시에 입원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점이 '서류 제출 완료'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A54**
- 지자체에 연장심사청구서[참고서식 제9호]와 제출서류가 도달하는 날이 입원만료일 1개월 전이어야 합니다.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입력 및 제출서류를 올리는 날이 그 입원연장청구 환자의 입원만료일 1개월 전이어야 합니다.

퇴원

Q55

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가 병원에 내원해서 퇴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참고 서식 제11호] 퇴원등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A55

- 퇴원신청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에 내원해서서 진행해야 하며, 입원신청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할 경우에도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퇴원등 통지서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Q56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는 반드시 주치의가 작성해야 하나요?

A56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에게 입원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입원연장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8항).
- 따라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연장결정 등이 통지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첨부하여 입원연장사실과 사유를 작성해 입원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위 연장통지는 주치의가 진단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의 결정 등을 통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 내의 직원이 서면을 제공하고 그 제공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며, 주치의가 작성하는 서류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Q57

[참고서식 제6호]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심사청구권 [] 고지서 [] 통지서에 체크하는 곳이 두 곳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A57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동의입원이나 보호입원환자나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할 때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하나 자·타해 위험성 등이 있을 경우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제9항).
- 이와 같이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그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사실과 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및 그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43조 제9항).
- 이 경우 참고서식 6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참고서식의 체크란인 ‘[] 고지서’는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직접 제공할 때 체크하는 것이고, ‘[] 통지서’는 병원 외부에 있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보낼 때 체크하는 것입니다.

Q58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퇴원명령으로 퇴원할 경우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에 환자와 보호의무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A58

- 입원기간 연장심사결과 퇴원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시켜야 합니다.
- 이 때, 퇴원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퇴원신청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심사결과에 따른 명령의 통지서를 환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Q59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퇴원명령 중 ‘임시 퇴원’은 법 제59조 제1항 제1호와 제63조 제1항에서 다른 의미인가요?

A59

- ‘임시퇴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잠정적인 퇴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군·구청장의 명령에 의해 퇴원이 되는 ‘임시퇴원명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의해 임시퇴원된 사람이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임시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한 사람이나 모두 임시퇴원기간 중에는 시·군·구청장의 경과관찰이나 재입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의한 임시퇴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임시퇴원기간이나 시점까지 시·군·구청장에 의한 경과관찰이나 재입원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여 보호입원환자나 행정입원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조 건부 퇴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Q60

‘지체 없이 퇴원’이라고 할 때 ‘지체 없이’란 몇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60

- ‘지체 없이’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즉시 퇴원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만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61

자의/동의 입원에서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을 해야 하는데 2개월이 도래되는 해당 일에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A61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3항 또는 제 42조 제4항에 따르면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개월 주기로 퇴원의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원일을 기준으로 2개월, 4개월, 6개월···이 도래되는 해당 일 전에 퇴원의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참고서식 제4호]로 환자의 서명을 받고 의무기록으로 남기면 됩니다.

Q62

보호입원에서 입원신청을 했던 보호의무자 1인만 퇴원신청을 하고 다른 1인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

A62

• 보호입원의 경우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 신청한 보호의무자 중 1명 또는 입원신청을 하지 않은 보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퇴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입원의 퇴원 제한 요건으로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보호입원의 퇴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Q63

행정입원 한 환자가 다른 시·군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처우개선심사 청구를 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명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A63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연장심사나 퇴원 및 처우개선심사에서 환자의 청구나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제1항 제4호). 보호입원환자나 행정입원환자 모두 이송을 청구하거나 동의한 경우라면 이송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환자의 이송결정이 내려진 경우 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새로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송받는 정신의료기관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이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64

자·타해 위험이 높아 행정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하면 퇴원이 가능한가요?

A64

-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을 이유로 입원시킨 것이어서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여 퇴원시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입원이 보호입원과 다른 점은 보호의무자의 입원이나 퇴원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다만, 보호의무자는 행정입원환자에 대해 퇴원을 원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의 퇴원심사청구나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보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Q65

행려자가 행정입원을 안 하고 자의입원을 하게 될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합니다.

A65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신상정보 미확인자에 대해 의료기관소재지의 지자체장 등에게 신상정보조회요청 시 회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경찰서에 조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Q66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권리고지에 있어서 보호자가 조사원 대면조사여부를 체크할 때 대신할 수 있나요?

A66

• 환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의사표현이 분명하다면 대면조사 여부를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의사확인 불능상태로 체크하거나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추가할 경우, 그 의견이 보호의무자의 의견임을 자필로 작성합니다.

Q67

전자직인으로 출력할 경우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또한 전자직인이 가능하다면 별도 인증이나 관리를 해야 하나요?

A67

• 전자결재를 통한 전자직인날인도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 별도의 인증이나 관리는 병원의 사정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Q68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 보호자인 부모님이 계신 경우 보호입원이 가능한지, 이 때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A68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등본으로 보호의무자 증빙하는 서류가 됩니다.
- 국내에서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를 발급받기가 어려우시면, 해외에서 발급받으신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호의무자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제적 등본(국적 변동 등의 내용 증빙),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69

정신요양시설에 자의입소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9

- 정신요양시설에 자의 및 동의입소 할 시에는 촉탁의(정신과전문의)의 대면진단 후에 입소하는 방법과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서 제출 후에 입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는 촉탁의(정신과전문의) 대면진단 후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촉탁의 근무일을 미리 확인한 후 정신요양시설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자의입소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에 입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외에 복지카드 등도 가능합니다.

Q70

공휴일 및 야간 시간 등에 응급입원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협력이 어려워 필요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원 후에도 보완할 수 있나요?

A70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 입원 시에 정신의료기관은 응급입원 의뢰서만 받으면 되지만, 경찰관과 의사가 입원 전에 그 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응급입원의 급박한 상황 상 그 서명날인은 입원직후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응급입원 직후 3일 이내에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입원으로의 전환과 행정입원으로의 전환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입원이 됩니다.

수가 시범사업 관련

Q7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 모두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A71 • 본 사업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 등이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Q72 ‘치료입원확인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72 •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관련 치료입원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하여 입원여부 확인 및 진단 결과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방문의사 소속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합니다.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 제43조제 11항 및 법 제44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해 부득이하게 같은 정신의료 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의한 확인시 소정점수 290.78점을 산정합니다.

Q73 ‘치료입원확인료’는 어떤 행위를 포함하나요?

A73 • ‘치료입원확인료’는 방문의사가 치료입원확인을 위한 방문 및 진료 후 소속 병원 복귀시 이동에 대한 교통비, 환자의 진료와 진단 결과서 작성에 관련된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74 정신질환관련 입원환자 모두에게 산정하나요?

A7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한 환자에게 산정합니다.

Q75 동일 환자의 치료입원확인 횟수 제한은 어떻게 하나요?

A75 • 환자의 상태변화 없이 반복적 치료입원확인 등의 경우에는 최초 ‘치료입원확인료’ 산정 후 여러 번 재확인하더라도 1개월간 1회만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환자상태 변화에 따른 치료입원확인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Q76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76 • ‘치료입원확인료’와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야간·공휴·소아·종별가산 등 수가 외별도 가산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Q77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치료입원 확인료 및 치료입원 확인관리료를 별도산정할 수 있나요?

A77 •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과 동일 수가코드를 적용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명세서 X항 01목에 기재

Q78

정신요양시설에서 법 제43조와 제44조에 의한 입소 확인 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78

-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확인은 정신요양시설과 계약된 촉탁의와 방문의사에 의해 각각 이루어지며 수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촉탁의에 의한 입소 확인 후 ‘치료입원확인료’는 후 촉탁의 소속 종별에 따라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1.진찰료 중 ‘재진진찰료’의 소정점수를 준용하여 산정하며, 청구시 상급종합병원(IA914-IA916), 종합병원(IA924-IA926), 병원(IA934-IA936), 의원(IA944-IA946)코드를 사용합니다.

※ 5단코드 끝자리 4: 최초입소확인, 5: 3개월연장입소, 6: 6개월연장입소

- 방문의사에 의한 입소 확인 후 ‘치료입원확인료’는 방문의사 소속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IA917-IA919), 종합병원(IA927-IA929), 병원(IA937-IA939), 의원(IA947-IA949)로 코드를 사용합니다.

※ 5단코드 끝자리 7: 최초입소확인, 8: 3개월연장입소, 9: 6개월연장입소

- 정신요양시설 입소 확인에 대한 진료내역은 방문의사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은 본 시범사업 지침의 ‘II.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나.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산정하며, 요양시설과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해 정산합니다.

Q79

촉탁의와 방문의사가 동일 병원 소속이면 ‘치료입원확인료’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79

- 촉탁의와 방문의사가 동일병원인 경우 방문의사의 ‘치료입원확인료’는 290.78점을 산정하며 코드는 ‘IA907~IA909’을 사용합니다.(종별 구분 없음)

※ 5단코드 끝자리 7: 최초입소확인, 8: 3개월연장입소, 9: 6개월연장입소

Q80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80

- 환자가 재원한 의료기관에서 ‘치료입원확인료’와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를 청구 후, 방문의사 요양기관과 상호정산 합니다.
- 단,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입소확인의 진료내역은 방문의사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간 상호 정산합니다.

Q81

정신요양시설에서 법 제43조와 제44조에 의한 입소 확인 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81

- Q7에 따라 수가를 산정하며, 입원명세서의 MT002(특정기호)에 ‘S004’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예) 동일 날에 촉탁의가 입소확인 및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 ① 입소확인 진료내역: 입원명세서의 ‘MT002(특정기호)’란에 ‘S004’ 기재 후 청구

※ 입원(내원)일수: 1, 요양급여일수: 1 기재

- ② 원내 직접조제·투약 진료내역: 외래명세서의 ‘MT001(상해외인)’란에 ‘J’를 기재하여 청구(기준과 동일하게 청구)

※ 입원(내원)일수: 1,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기재

Q82

정신요양시설 입소 확인 후 촉탁의와 방문의사의 면허번호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A82

- 방문의사와 촉탁의의 ‘치료입원확인료’에 해당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합니다. (촉탁의 면허번호 기재여부 확인)

Q83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은 별도 현황 신고를 해야 하나요?

A83

- 의료기관의 최초 현황신고는 기관 지정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서류로 같음
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별도 신고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Q84 기관 변경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84

- 지정받을시 제출한 내역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즉시 협
의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019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발행일 2019년 8월
발행처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소 (우 04933)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
대표전화 (02) 2204-0114
팩스 (02) 2204-0383
홈페이지 <http://www.ncmh.go.kr>
I S B N 979-11-90036-21-4
인쇄처 글월기획 Tel. (02) 2268-8684
비매품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2019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9 791190 036214
ISBN 979-11-90036-21-4

비매품
93510